

WTO 쇠고기 분쟁 패널의 내용과 향후 대책

이재옥	수석연구위원
어명근	부연구위원
임송수	부연구위원
신승렬	부연구위원
정민국	책임연구원
허덕	부연구위원
임정빈	책임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P15257

○ 구 분 : 단기정책과제(쇠고기패널대책반)

○ 연 구 기 간 : 2000. 5. 17 ~ 7. 17(2개월)

○ 연구참여자

소 속	직 위	성 명	연 구 담 당
국제농업연구실	수석연구위원	이 재 옥	연구총괄
국제농업연구실	부 연구 위 원	어 명 근	국내보조
국제농업연구실	부 연구 위 원	임 송 수	
농 업 관 측 센 터	부 연구 위 원	신 승 렬	수입관리제도
농산업경제연구부	책 임 연 구 원	정 민 국	
농산업경제연구부	부 연구 위 원	허 덕	구분판매제도
국제농업연구실	책 임 연 구 원	임 정 빈	쇠고기분쟁의 경위 및 현황

머 리 말

1999년 2월과 4월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가 각각 우리 나라의 쇠고기 수입 및 유통제도, 한우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에 대해 WTO에 제소한 이후 그 간 진행되어 온 패널의 검토결과를 담은 중간보고서(Interim report)와 최종 보고서(Final report)가 각각 지난 5월 11일과 6월 15일 분쟁당사국들에 배포 되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패널은 우리 나라의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제도 등 수입쇠고기 유통상의 제약과 1997/98년의 소 구매사업에 지불된 보조금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에 매우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패널의 보고서는 기존의 쇠고기 수출국들이 주장 해 온 우리 나라의 수입쇠고기 유통 및 수입제도문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정부가 WTO 농업협정내에서 시행해 온 국내보조정책의 WTO 통보까지도 문제시하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따라서 패널의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 및 분석하여 쟁점별 대책을 마련하고, 상소의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논리의 개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보고서는 우리 연구원이 중간보고서 배포 직후부터 운영한 「WTO 쇠고기 분쟁패널 대책반」의 연구결과로서 쇠고기 분쟁의 경위 및 현황, 주요 쟁점별 분쟁내용 및 패널의 판정, 그리고 향후 대응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짧은 기간에 이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며, 이 보고서가 무역분쟁에 대한 이해증진과 관련정책의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00. 7.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강 정 일

빈면

목 차

I. 쇠고기 분쟁 경위 및 현황	1
1. 쇠고기 분쟁의 배경	1
2. 분쟁의 경과 및 패널절차의 진행	2
3. 패널의 중간 및 최종 판정결과와 향후 일정	5
II. 주요 쟁점별 분쟁내용 및 패널의 판정	16
1. 수입육 구분판매제도	16
2. 쇠고기 수입제도	30
III. 소에 대한 국내보조	46
1. 국내보조 현황	46
2. 제소국의 주장과 우리의 대응 현황	51
3. 패널의 판정	58
IV. 주요쟁점별 대응논리 및 향후대책	61
1. 수입육 구분판매제도	61
2. 쇠고기 수입제도	68
3. 소에 대한 국내보조	72

빈 면

I. 쇠고기 분쟁 경위 및 현황

1. 쇠고기 분쟁의 배경

- 지난 1999년 2월 미국이, 같은 해 4월 오스트레일리아가 우리 나라의 수입쇠고기 관련 수입 및 유통제도를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제소하게 된 배경은 1997년 하반기부터 불어닥친 우리의 외환 및 경제위기로 인해 수입이 급감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이었음.
- － 97년 말 발생한 외환 및 경제위기는 환율 상승으로 쇠고기 사육에 필수적인 수입사료가격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외환 부족으로 인해 사료곡물 수입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였음. 이에 양축 농가들은 소를 더 이상 사육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되어 많은 물량을 도축하게 되었으며 소비마저 위축되었음. 또한 외환 및 경제위기전보다 환율 상승으로 인해 수입쇠고기의 가격은 증가한 반면에 국산 쇠고기가격은 하락하였음.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1998년에는 쇠고기 수입이 크게 줄어 당초 수출국들과 합의한 쿼터 물량을 소진하지 못하게 되었음.
- － 쇠고기 수출국들은 우리 나라가 UR 농업협상 타결 당시 쇠고기에 대해 수입기회를 보장한 쿼터량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쿼터량의 소진, 수입육 구분판매제도의 폐지, 축산물 유통사업단(LPMO) 및 업계간 자율거래제도(SBS)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수입관리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별 성과가 없자 수입쇠고기와 관련된 우리 나라의 각종 제도들을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게 된 것임.
- － 그 동안 한-미 양국은 우리 나라의 쇠고기 수입 쿼터 미소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양자간 협의를 가져왔으며, 1999년 1월 26부터 30일까지 워싱턴에서 다시 최종적인 협의를 개최한 바 있으나 서로의 견해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자 미국은 1999년 2월 본 사안

을 WTO 분쟁해결기구에 공식 제소하게 된 것임.

- 쇠고기 분쟁은 우리의 경제위기로 인한 수입쿼터량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에서 시피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제소국들이 GATT 규정이나 WTO 농업협정위반을 주장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쇠고기 수입 및 국내 유통제도, 소와 관련된 보조금 등 다른 분야까지도 문제를 삼게되었음.

- 패널에서의 주요 쟁점사항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축산물 유통사업단(LPMO)과 업체간자율거래제도(SBS) 등을 통한 우리나라의 현행 수입관리제도가 농산물 양허표상의 “잔존 수입제한(Remaining restrictions)”에 해당하고 2000년 말까지 이러한 제도의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
- 수입쇠고기 전문 판매점제도, 수입쇠고기에 대한 표시제 등 수입쇠고기 유통상의 제약이 GATT 협정문상 내국민대우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 1997년이후 시행된 소 구매제를 비롯한 한우산업에 대한 보조금이 UR 협정상 감축의무가 면제되는 최소허용보조(De-minimis)을 초과하여 농업 총보조감축기준(AMS)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2. 분쟁의 경과 및 패널절차의 진행

- 99년 2월, 미국은 그 간의 한·미간 쇠고기 협의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자 주 제네바 대표부 미국 대사(Rita Hayes) 명의로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 및 WTO 분쟁해결기구 의장 앞으로 서안을 발송하여 한국의 쇠고기 수입제도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공식 요청하며 제소
- 동 서한에서 미국은 쇠고기 수입에 대한 수량제한, 수입쇠고기에 대한 구분판매제도 등 차별제도, 수입쇠고기에 부과되는 부과금(Mark-up), 축산업에 대한 WTO 양허 이상의 국내보조 등 쇠고기 수입관련조치가 GATT 2조(관세양허), 3조(내국민 대우), 11조(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

17조(국영무역) 및 농업협정문의 국내보조 관련 의무를 위배하였다고 주장

-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가 제3자 참여국으로 참여
- 미국 측은 양자협 의 과정에서 수입쿼터 중 수입되지 않은 물량을 이월하여 수입하고, 수입육 전문 판매점을 철폐하며, 99년 수입쿼터를 모든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배분토록 하고, 쇠고기의 현행관세를 인하할 것 등을 요구
- 이에 대해 우리 나라는 쇠고기 수출국에게 대해 수입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쿼터가 소진되지 않은 것은 IMF경제위기로 인한 수요격감에 의한 것이며, 이같이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충족되지 않은 쿼터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수입할 의무가 없고, 수입육 전문 판매점제도는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둔갑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쿼터배분을 위해서는 현행 수입제도가 불가피하며 쇠고기 수입관세는 UR 협상결과에 따라 WTO에 양허한 것이므로 동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주장
- 1999년 4월, 오스트레일리아가 독자적으로 우리 나라 수입쇠고기제도에 대해 WTO에 제소하고 공식협의 요청
- 우리 나라는 미국 및 오스트레일리아와의 지속적인 우호적 통상관계 유지를 위해 가능한 한 패널설치 이전에 제소국들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제소국들이 쇠고기 수입쿼터의 개념을 최소 의무 수입물량으로 보고 쿼터의 전량소진방안을 요구하는 등 원론적 입장을 계속 고수함에 따라 패널의 설치 전 합의에 실패
- WTO 패널을 통한 분쟁해결에는 최소한 1년 이상 소요되고 우리 나라 쇠고기 산업의 수입개방시기가 2001년 1월 1일로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

을 감안 할 때 양자 협의 과정에서 제소국들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 보다 WTO 패널의 판정을 기다리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 보다 유리한 측면도 있었음.

- WTO 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시작하고 협의 요청후 60일 이내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제소국은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패널 설치를 요구
 - 1999년 5월 한·미간 양자협상 실패로 미국이 패널 설치 요청
 - 1999년 7월 한·호간 양자협상 실패로 오스트레일리아가 요청한 패널의 설치, 미국 패널과 통합
- 1999년 5월 패널이 설치된 후 그 간 제소국 및 우리 나라의 서면 입장 입장제출과 2차에 걸친 구두심리 등의 패널심리 절차를 진행해 왔음.
 - 1차 회의: '99. 12. 13~14
 - 2차 회의: 2000. 2. 16.
- 패널의 진행 과정에서 수출국들은 쿼터의 미소진 문제와 함께 전반적인 우리 나라 쇠고기 산업의 수입 및 유통관행에 대해 GATT 및 WTO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과 소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쟁점화 하였음.
- 2000년 5월 10일 WTO 사무국은 우리 나라 쇠고기 수입, 유통 및 보조금 제도를 대상으로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가 제소한 패널의 중간보고서 배포
 - 패널이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기에 앞서 분쟁당사국들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 논평할 기회를 주기 위해 분쟁당사국 정부에만 제한적으로 배포하는 것이 패널의 중간보고서임.

- 패널의 중간보고서는 그 동안 패널에서 핵심쟁점이 되어 왔던 우리 나라의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제도 등 유통상의 제약과 한우산업에 대한 보조금이 WTO 협정에 위반한다고 잠정 판정하였음.
- 중간보고서의 내용에서 주로 수출국의 주장만이 반영되고 우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정부는 우리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검토의견을 담은 논평을 제출하였음(5월 24일).
-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중간보고서의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 15일 배포된 최종보고서에서는 중간보고서의 내용과 별 차이 없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결정됨.
 - 이에 우리 정부는 최종 보고서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수출국 측 주장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판단 아래 패널결과에 불복하여 빠른 시일 내 상소할 예정임(9월 중순).

3. 패널의 중간 및 최종 판정결과와 향후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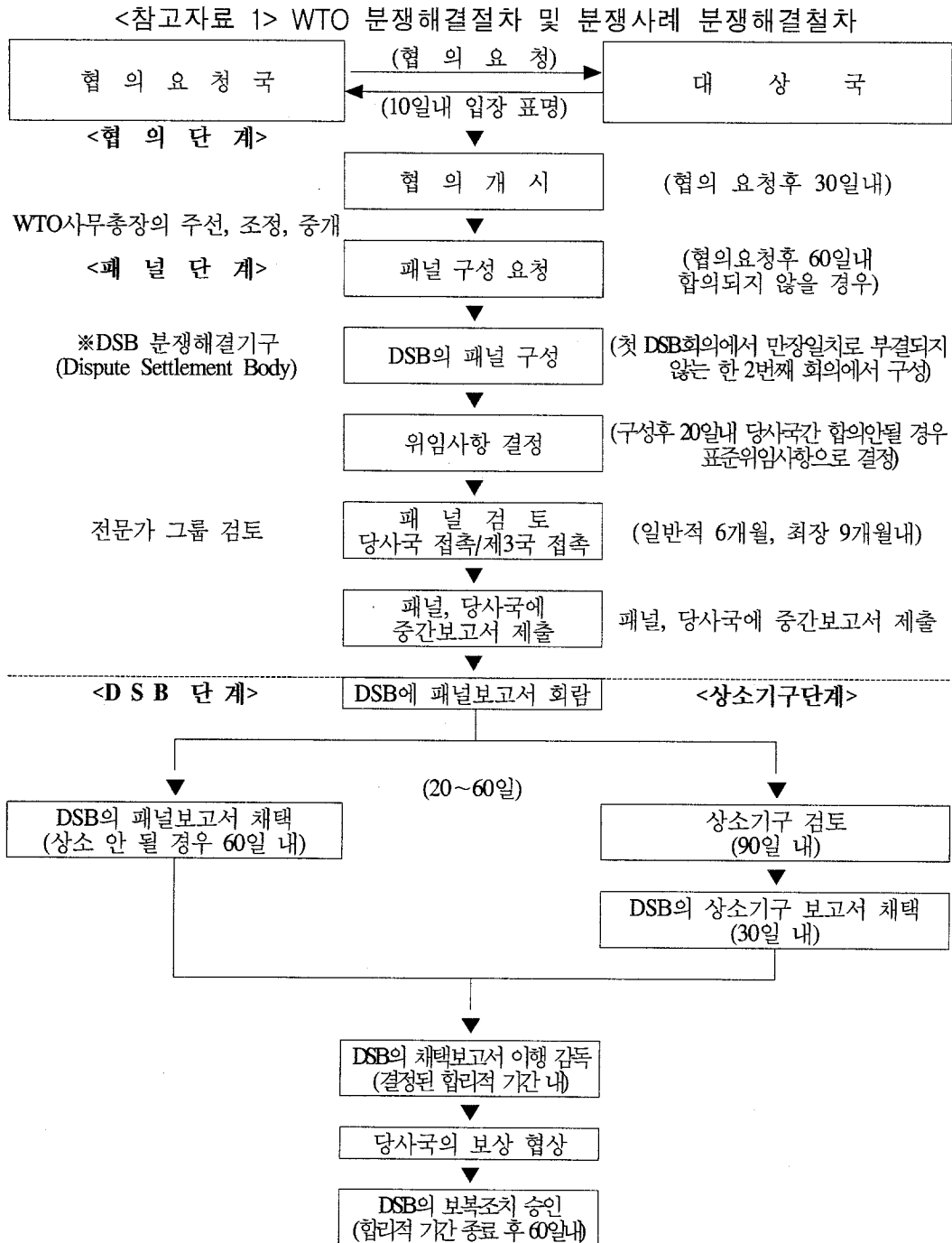
- 패널 중간 보고서는 그 동안 패널 과정에서 제소국들과 우리 나라간의 논란이 되어 왔던 쇠고기의 구분판매제도, 수입제도, 쇠고기수매와 관련된 보조금에 대해 잠정적 평결 및 결론을 담고 있음.
 -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 표시제도 등 수입쇠고기 유통상 각종 제약은 수입품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GATT 내국민 대우 위반이라고 판정
 - 1997년과 1998년 소 수매사업으로 인한 국내 보조금은 우리측의 보조금 산정방식의 오류로 인해 WTO 농업협정문 약속 이행 위반이라 판정
 - 단, 축산물 유통사업단, 업계간 자율거래제도 등과 관련한 수입제도는 지난 UR 협상당시 우리 양허표상의 잔존 수입제한 조치에 해당하므로 쇠고기 시장이 완전 개방되는 2001년 1월 1일까지는 허용 가능
- 패널의 최종보고서에서는 1990년 도입되어 둔갑판매로부터 소비자를 보

호하여 온 우리의 쇠고기 구분판매제도와 수입제도, 소 구매와 관련된 보조금에 대하여 중간보고서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결정됨.

- 구분판매제도는 수입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기회를 제한하는 차별적 제도이며, 97/98년 소 구매 사업으로 인한 국내보조금은 우리의 보조금 계산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 통상 관례적으로 패널이 결정한 중간보고서의 내용은 분쟁 당사국이 주어진 논평 기간에 커다란 반증을 보이지 못하는 한 최종보고서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향이 있음.

- 이와 같이 패널보고서의 내용이 제소국의 주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우리의 수입쇠고기 둔갑판매와 같은 유통상황 반영 요구와 현행 수입 및 유통제도, 보조금 관련 통보 사항은 이미 쇠고기 수출국이나 그 밖의 WTO 회원국들과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제도라는 주장 등은 반영되지 않았음.
- 이에 우리 정부는 금번 쇠고기 무역분쟁의 중요성과 2001년부터 개방예정 쇠고기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국의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상소하기로 결정함.
- 우리 정부가 WTO 분쟁해결기구에 상소하면(9월 중순) 상소심도 패널절차와 비슷하게 분쟁당사국의 서면입장제출과 당사국회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의견 주장의 기회를 부여
- 상소기구는 분쟁당사국이 상소를 요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원국에 배포해야 함(12월 혹은 1월 중).
- 상소기구보고서가 회원국에 배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상소기구보고서 채택(1월 혹은 2월경)



자료: 농림부

<참고자료 2> 보고서가 채택된 무역분쟁 사례

《피소국/제소국/제소일(상소일)/제소내용/최종판정결과》

1. 미국 / 베네수엘라, 브라질 / '95. 2('96. 2) / 미국이 베네수엘라 및 브라질 산 휘발유에 대하여 차별적인 표준을 적용하는 조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조 및 3조를 위반 / 미국의 조치는 GATT에 위배
2. 일본 / EU, 캐나다, 미국 / '95. 6('96. 8) / 일본이 수입 주류에 대하여 차별 과세하는 것은 GATT 제3조를 위반 / 일본의 주세체계는 GATT에 위배
3. 미국 / 코스타리카 / '95. 12('96. 11) / 미국의 코스타리카산 섬유수입 제한 조치는 WTO 섬유협정을 위반 / 미국의 조치는 섬유협정에 위배
4. 브라질 / 필리핀 / '95. 11('96. 12) / 브라질이 필리핀산 건조 코코넛에 대하여 부과한 상계관세조치는 GATT 제6조를 위반 / 필리핀의 제소를 기각
5. 미국 / 인도 / '96. 3('97. 4) / 미국의 인도산 섬유 수입제한조치는 WTO 섬유협정을 위반 / 미국의 조치는 섬유협정에 위배
6. 캐나다 / 미국 / '96. 3('97. 4) / 캐나다의 정기간행물 수입제한조치는 GATT 제3조 및 11조를 위반 / 캐나다의 조치는 GATT에 위배
7. EU / 미국, 멕시코, 온두라스, 과테말라, 에콰도르 / '95. 9('97. 6) / EU의 바나나 수입, 판매 및 유통 관련제도는 GATT 제1조 및 3조를 위반 / EU의 바나나 수입제도는 GATT에 위배
8. 인도 / 미국 / '96. 7('97. 10) / 인도의 약품 및 농화학상품에 대한 특허보

호조치는 WTO 지적재산권 협정을 위반 / 인도의 조치는 지적재산권 협정에 위배

9. EU / 미국, 캐나다 / '96. 4('97. 9) / EU의 호르몬 처리 육류 수입금지조치는 GATT 제3조 등을 위반 / EU의 조치는 GATT에 위배
10. 인도네시아 / 일본, EU 미국 / '96. 10 / 인도네시아가 소위 국민차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 및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은 GATT 제1조 및 3조를 위반 / 인도네시아의 조치는 GATT에 위배
11. EU / 브라질 / '97. 2('98. 4) / EU의 특정 가금류 수입과 관련된 제도 및 가금류 제품에 대한 관세율할당(TRQ) 제도 운영이 GATT 제10조 등을 위반 / 브라질의 제소를 기각
12. EU / 미국 / '96. 11('98. 3) / EU의 특정 근거리통신망 장비 및 멀티미디어용 PC에 대한 관세부과 목적의 세목 재분류는 GATT 제2조를 위반 / 패널은 EU의 조치가 GATT에 위배된다고 판정했으나, 상소기구는 GATT에 일치한다고 패널 판정 번복
13. 일본 / 미국 / '96. 6 / 일본의 수입 사진필름 및 현상지의 국내판매를 위한 분배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과 규제가 GATT 제3조를 위반 / 미국의 제소를 기각
14. 아르헨티나 / 미국 / '96. 10('98. 1) / 아르헨티나가 신발, 섬유, 의류 등의 수입에 대하여 양허관세율보다 높은 관세 및 기타의 기술적 제한 요건 등을 부과하는 것은 GATT 제2조 등을 위반 / 아르헨티나의 조치는 GATT에 위배

15. 과테말라 / 멕시코 / '96. 10('98. 8) / 과테말라의 멕시코산 시멘트에 대한 반덤핑조치는 WTO 반덤핑협정을 위반 / 패널은 과테말라의 조치가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으나, 상소기구는 반덤핑협정과 일치한다고 패널판정을 번복
16. 오스트레일리아 / 캐나다 / '95. 10('98. 7) / 오스트레일리아의 캐나다산 연어수입 제한조치는 GATT 제11조를 위반 / 오스트레일리아의 조치는 GATT에 위배
17. 미국 /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타이 / '96. 10('98. 7) / 미국이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타이로부터 수입하는 새우 및 새우제품에 대하여 부과한 수입금지조치는 GATT 제1조 및 11조를 위반 / 미국의 조치는 GATT에 위배
18. 인도 / EU / '97. 4 / 인도가 의약품 및 농화학 제품에 대하여 특허보호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은 WTO 지적재산권 협정을 위반 / 인도의 관련제도 미비는 지적재산권 협정에 위배
19. 한국 / EU, 미국 / '97. 4('98. 10) / 한국의 수입주류에 대한 차별과세는 GATT 제3조를 위반 / 한국의 주세제도는 GATT 협정에 위배
20. 일본 / 미국 / '97. 4('98. 11) / 일본의 농산물 수입금지 및 위생검역조치는 WTO 위생검역협정 등을 위반 / 일본의 조치는 위생검역협정에 위배
21. 미국 / 한국 / '97. 8 / 미국이 한국산 D램에 대하여 반덤핑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WTO 반덤핑협정을 위반 / 미국의 반덤핑 관련 규정은 반덤핑협정에 위배

22. 오스트레일리아 / 미국 / '98. 5 / 오스트레일리아의 자동차용 가죽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 / 오스트레일리아의 조치는 보조금 협정에 위배
23. 캐나다 / 브라질 / '97. 3('99. 5) / 캐나다가 민항기 수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WTO 보조금 협정 제3조를 위반 / 캐나다의 조치는 WTO 보조금협정에 위배
24. 브라질 / 캐나다 / '96. 6('99. 5) / 브라질이 자국의 엠브래어(Embraer) 항공기에 대한 외국인 구매자에게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WTO 보조금협정 제3조 및 27조를 위반 / 브라질의 조치는 WTO 보조금협정에 위배
25. 인도 / 미국 / '97. 7('99. 5) / 인도가 많은 품목이 농산물, 섬유 및 공산품에 대하여 수입제한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GATT 협정 제11조, 18조, WTO 농업협정 제4조 및 WTO 수입허가절차협정 제3조를 위반 / 인도의 조치는 GATT 협정 및 WTO 농업협정에 위배
26. 캐나다 / 미국, 뉴질랜드 / '97. 10('99. 7) / 캐나다가 낙농품에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우유에 대한 관세율할당(TRQ)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GATT협정, WTO 농업협정, WTO 보조금협정 및 WTO 수입절차협정의 제반규정을 위반 / 캐나다의 조치는 GATT 협정 및 WTO 농업협정에 위배
27. 터키 / 인도 / '96. 3('99. 7) / 터키가 광범위한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하여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부과하는 것은 GATT 협정 제11조, 13조 및 WTO 의류 및 섬유협정 제2조를 위반 / 터키의 조치는 GATT 협정 및 WTO 의류 및 섬유협정에 위배

28. 미국 / EU / '98. 11 / 미국이 자국의 통상법(Trade Act)을 근거로 삼아 다른 나라에 대하여 시간적인 여유를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역제재조치를 부과하는 것은 GATT 협정 및 WTO 분쟁해결규정(DSU)을 위반 / 미국의 통상법은 GATT 협정 및 분쟁해결규정에 위배되지 않음
29. 아르헨티나 / EU / '98. 4('99. 9) / 아르헨티나가 발동한 신발류의 수입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는 GATT 19조 및 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제반조항을 위반 / 아르헨티나의 긴급수입제한조치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배
30. 한국 / EU / '97. 8('99. 9) / 한국이 발동한 혼합분유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GATT 협정 제19조 및 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제반 조항을 위반 / 한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배
31. 칠레 / EU / '97. 12('99. 9) / 칠레의 주세체계가 GATT 협정 제3조를 위반 / 칠레의 주세체계는 GATT 협정에 위배
32. 미국 / EU / '99. 1(2000. 6) / 미국의 저작권법이 TRIP 협정 위반 / 미국의 저작권법 110조 5항의 일부분은 TRIP협정에 위배
33. 미국 / 일본 / '99. 2(2000. 5) / 미국의 반덤핑법이 WTO 규정위반 / 미국의 국내 반덤핑규정은 WTO 협정에 위배
34. 캐나다 / 브라질 / '99. 8(2000. 5) / 캐나다의 항공기수출에 영향 미치는 조치위반 / 캐나다의 조치는 WTO 수출보조 및 상계조치 규정 위배
35. 브라질 / 캐나다 / '99. 8(2000. 5) / 브라질의 항공기 수출보조는 WTO 규정위반 / 브라질의 조치는 WTO 수출보조 및 상계조치 규정 위배

36. 캐나다 / 미국 / '99. 5('2000. 5) /캐나다의 특허권보호법은 TRIP 규정 위반 / 캐나다의 특허권 규정은 TRIP 규정 위배
37. 한국 / 미국/ '99. 2('2000. 5) /한국의 신공항공단은 정부조달협정 위반 / 한국의 조치는 정부조당협정에 위배되지 않음.

<참고자료 3> 우리나라와 관련한 무역분쟁 사례

가. 상대국이 우리 나라를 제소한 경우

《제소국/ 제소일 / 제소대상제도 또는 조치 / 결과》

1. 미국 / '95. 4 / 수입농산물의 검사 및 검역제도 / 양자합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는 분쟁이 종료된 상태지만 미국이 제소를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양자협약이 진행중인 상태
2. 미국 / '95. 5 / 식품유통기한제도 / 양자합의로 종료
3. 캐나다 / '95. 11 / 먹는 샘물 수입제도 / 양자합의로 종료
4. EU / '96. 5 / 통신장비 조달제도 / 양자합의로 종료
5. 미국, EU / '97. 4 / 주세제도 / 패소
6. EU / '97. 8 / 혼합분유 긴급수입제한조치 / 패소
7. 미국 / '99. 2 / 쇠고기 수입제도 / 패널절차 진행
8. 미국 / '99. 2 / 신공항건설공단의 정부조달제도 / 승소

나. 우리 나라가 상대국을 제소한 경우

《피소국 / 제소일 / 제소대상제도 또는 조치 / 결과》

1. 미국 / '97. 7 / 칼라 텔레비전에 대한 반덤핑조치 / 미국의 반덤핑조치 철회

회로 종료

2. 미국 / '97. 8 / D램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조치 / 승소
3. 미국 / '99. 7 /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 / 패널절차 진행
4. 미국/ '2000. 6/ 탄소강관에 대한 세이프가드/ 양자협약 단계

II. 주요 쟁점별 분쟁내용 및 패널의 판정

1. 수입육 구분판매제도

가. 구분판매제 도입 배경과 내용

- 1988년 8월 쇠고기 수입을 재개함. 그럼에도 국내 소 가격이 계속적으로 급등하고 수입육이 한육우 쇠고기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행위가 성행함. 이에 따라 1989년 말 저가의 수입육이 둔갑에 의해 국내산 쇠고기로 판매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적절히 수입쇠고기에 대한 수요를 늘려 국내 소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제도를 도입하게 됨. 동 제도가 도입된 후 산지 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함.
- 1989년 3월에는 전문판매점과 동시판매점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1989년 말부터 1990년 초에 걸쳐 둔갑판매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동시 판매점은 폐지하고 전문판매점으로 일원화하여 현재까지 유지되어 옴.
- 또한 구분판매제 도입의 배경에는 둔갑판매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자 소비자들이 국내산과 수입육을 구분하여 판매해 줄 것을 요구한데도 그 이유가 있음.

1) 구분판매 도입의 배경에 대한 이론적 근거

- 저가의 수입육 공급확대로 인한 소 가격 안정(고가의 국내산과 저가의 수입 쇠고기의 가격차별에 의한 국내산 쇠고기 수요 감축)
- 가격차별 정책은 동일품목(국내산과 수입육은 구분이 어려움으로 소비자는 동질의 상품으로 인식)에 대하여, 1)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이하
고, 2) 시장이 분리되어 있다는 가정이 필요함.

- 수입육의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 -2.4007 , 국산육의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 -1.2428^1 로, 특히 수입육의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매우 크므로, 수입육의 공급 확대에 의한 가격의 안정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론적 근거로 함.
- 시장분리의 방법으로 1) 구분판매의 방법과 2) 원산지 표시의 방법이 있으나, 둔갑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구분판매제도를 채택함.
- ※ 원산지 표시에 대한 개념은 UR 협상 타결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검토가 이루어진 것이며, 원산지 표시보다는 구분판매가 시장의 분리 방법으로는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

2) 둔갑 판매량 추정

○ 추정 방법

- 정육점에서의 둔갑 추정 물량은 각 정육점에서 판매된 국내산 쇠고기의 총량과 실제 국내산 쇠고기의 공급량과의 차이로 추정이 가능함. 즉, 정육점에서 둔갑된 추정물량 = (월간 평균 쇠고기 판매량 $\times$ 12월 $\times$ 정육점수) - (전체국내산 쇠고기 소비량 $\times$ 정육점 경유물량 비율)으로 구할 수 있을 것이며, 자료가 있다면, 동일한 방법에 의해 식당에서의 둔갑 추정 물량도 구할 수 있을 것임. 즉, 식당에서의 둔갑 추정 물량 = (월간 평균 쇠고기 구입량 $\times$ 12월 $\times$ 식당수) - (전체국내산 쇠고기 소비량 $\times$ 식당 경유물량 비율)의 식에 의해 구할 수 있을 것임.

○ 추정결과

- 정육점에서의 둔갑 추정 물량 = (월간 평균 쇠고기 판매량 $\times$ 12월 $\times$ 정육점수) - (전체국내산 쇠고기 소비량 $\times$ 정육점 경유물량 비율)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우고기 고급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1993.8, p.11

$$= (16.0\text{두/연}(1996\text{년})^2 \times \text{마리당 평균 생체중}(543\text{kg})^3 \times \text{정육률}(40.2\%)^4 \times (\text{총정육점수 } 53,077\text{개소}^5 - \text{수입육 전문판매점 수 } 8,282\text{개소}^6)) - (173,666\text{톤}^7 \times 53.5\%^8) = 156,450\text{톤} - 92,911\text{톤} = 63,539\text{톤이 됨.}$$

표 1. 국내산과 수입(고급)육의 도소매가격 변화, 1989~99

연도	도매가격(원/지육kg)			소매가격(원/정육500g)		
	국내산(A)	수입고급육(B)	B/A(%)	국내산(C)	수입고급육(D)	D/C(%)
1989	6,243	3,803	61	5,107	3,320	65
1990	6,629	4,200	63	5,574	3,601	65
1991	7,328	4,549	62	6,351	4,156	65
1992	8,046	5,037	63	7,085	4,708	66
1993	7,153	4,943	69	7,395	4,699	64
1994	7,423	4,984	67	7,719	4,329	56
1995	8,245	4,731	57	8,093	4,285	53
1996	7,524	-	-	8,118	3,201	39
1997	6,078	4,4581)	73	7,537	3,797	50
1998	5,624	6,5781)	117	6,911	4,047	59
1999	7,274	4,9331)	68	7,235	3,971	55

자료 : 1989~1995년까지는 축협중앙회, 「축산물 유통업무자료집」, 1996.7

1996~1999년까지의 소매가격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축산물가격자료」, 1999 이며, 수입육 소매가격은 중품가격임.

1) 축협중앙회, 「2000년 2월 축산관측(안)」, 2000.2.12(내부자료)

-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1세기에 대응한 농수산물 유통개선대책 연구-양곡, 축산, 수산 부문」, 1997.6, p.91
- 3) 축협중앙회, 「1996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보고」, 1997, p.67
- 4)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1999, p.328
-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1세기에 대응한 농수산물 유통개선대책 연구-양곡, 축산, 수산 부문」, 1997.6, p.91
- 6) 축협중앙회, 「축산물유통업무자료집」, 1996, p. 110
- 7) 축협중앙회, 「축산물수급 및 가격자료」, 1998, p. 106
-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1세기에 대응한 농수산물 유통개선대책 연구-양곡, 축산, 수산 부문」, 1997.6, p.80

※ 추정의 결과, 국내산 소비량 중 36.6%가 둔갑판매 된 것으로 나타남.
1996년 수입쇠고기 소비량이 149,204톤이었으므로 수입육의 약 42.6%가 둔갑되어 판매된 셈임.

- 추정결과의 해석 : 1996년은 국내 소 가격이 2,848천 원으로 매우 높은 시기이므로 둔갑의 비율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추정됨.
- 1996년 평균 국내산 쇠고기 가격(A)과 고품질 수입쇠고기 가격(B) 비율 (B/A) : 소매 39%로 가장 낮은 시기임.
- 식당에서의 둔갑물량 추정은 자료의 미비로 계산이 곤란하여 생략함.

○ 현행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제도의 주요내용

- 수입쇠고기는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장에서만 판매하며, 국내산 쇠고기는 국내산 쇠고기 판매점에서만 판매토록 되어 있음. 판매점의 개설과 영업행위 면에서 신고만으로 개설이 가능하며 판매점의 개설에 제한이 없으므로, 국내산 쇠고기 판매점과 수입쇠고기 판매점은 동등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식육판매업 신고서와는 별도로 전문판매점 개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수입 쇠고기 전문판매점이 표시된 간판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음.

나. 제소국 주장과 우리의 대응 현황

1) 제소사항 및 한국의 대응 요약

-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양국이 우리 나라의 구분판매제에 대해 GATT 제 3조 4항(내국민대우) 위반으로 제소함. 제소국들의 주장은 우리 나라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는 국내산 쇠고기에 비해 수입산에 대한 차별조치(비우호적 조치)를 발생시키며 이로 인해 GATT 협정상 내국민대우위반이라는 것임. 즉, 국내산에 비하여 수입산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했다는 것임.

○ 한국의 대응 :

가) 수입쇠고기에 대한 차별조치는 없었음.

- 수입쇠고기를 국내산 쇠고기 판매점에서 팔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산 쇠고기는 수입육 판매점에서 팔 수 없음.

나) 수입쇠고기 판매점 허가에 대해서는 공개적이었으며, 수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없었음.

- 국내산 쇠고기 판매점과 수입쇠고기 판매점은 전환이 자유로움.

다) 한국은 현재 쇠고기에 대하여는 쿼터가 있음. 따라서 제소국이 3조 4항 위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쿼터의 존재와 이로 인한 쿼터 관리제도와는 별개의 차별이 존재하고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여야 함을 주장함. 제소국은 이에 대한 입증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함.

2) 한국의 주장

○ 구분판매제도는 부정육 유통방지를 위한 법적 제한제도로 꼭 필요한 조치임.

○ 구분판매제도는 제 20조 d 항과 WTO선언에 부합됨.

가) 주요 이슈

i) 비우호적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 구분판매는 선호차별조치였음.

◎ 구분판매는 경쟁을 제한한 조치였음.

◎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에 대한 간판부착의 의무화로 수입육에 대해 직접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고,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

이 됨.

ii) 구분판매제도가 둔갑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가 여부

◎ 다른 대안적 조치는 없는지 여부

- 쇠고기 소매시장에서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WTO에서 인정하는 대안적 조치의 존재와 그 대안의 적용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경제 타 부문에 있어 구분판매제도가 있는지 여부

iii) 구분판매제가 외국산과의 경쟁으로부터 자국산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가 여부

나) 이슈별 대응과 패널의 평가

i) 비우호적 조치(less favorable treatment)가 있었는지 여부

◎ 제소국의 주장(제 3조 4항 위반)

(i) 한국의 구분판매제는 비우호적 대우

- ◇ 수입육 판매점 5,000여 점포, 국내산 쇠고기 판매점 45,000여 개소
- ◇ 수입육 분리판매명령은 기본적으로 수입육에 대한 차별조치에 해당하므로 같은 장소에서 나란히 판매할 기회를 주어야 함.

(ii) 추가로 오스트레일리아는 한국의 쇠고기 분리진열이 수입육 판매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함.

- ◇ 구분판매제도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비용이 필요하므로 비용 면에서 자국산보다 수입산의 부담이 큼.

◎ 한국의 대응(구분판매가 불공평한 조치가 아니라고 입증)

(i) (국내산 판매점 > 수입육 판매점)이라는 사실이 차별에 의해 구성된 것이 아니며, 한국의 책임에 연계되어 있지도 않다고 주장함.

◇ 수적으로 제한한 적이 없음.

◇ 이에 대해 제소국은 개별기업이 상업적 견지에서 국내산과 수입육 어느 한 쪽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의 규제개입으로 강요되어 있다고 주장함.

(ii)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다양한 국내규제를 할 수 있음. 수입쇠고기와 국내산 쇠고기의 구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둔갑판매의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한 대안이 구분판매제도임. WTO는 회원국의 국내규제까지도 간섭하여서는 안됨. 따라서, 구분판매에 관한 명령은 GATT 규정의 완화규정에 적합한 것임.

◇ 구분판매를 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국내산 쇠고기와 수입쇠고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수입육과 국내산육의 비교에 관한 기회를 감소시키게 된다고 주장함.

◎ 패널의 판정

(i) 수입육과 국내산 쇠고기의 구분판매제도는 수입육을 국내산에 비해 차별적으로 대우함.

(ii) 구분판매제는 3조 4항에 위배되므로 10조 위배여부의 판단은 불필요함.

◎ 한국의 대응에 대한 검토의견

- (i) 한국의 구분판매제는 비우호적 대우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① 둔갑의 방지와 함께 ② 수입에 의한 가격 하향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므로 더욱 목적달성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을 주장. 지금까지의 한국의 대응은 첫 번째 목적에만 치중하여 설명함.
- (ii) 또한, 제소국간 양자협상에서 구분판매에 의해 오히려 제소국들이 더 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설득할 필요가 있던 것으로 판단됨.
 - ◇ 만일 둔갑이 더 많이 된다면, 저가의 수입육이 고가로 판매되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수입물량은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던 것으로 판단됨.

ii) Article III: 4와 특별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진열명령

(i) 당사자간 쟁점사항

- ◇ 제소국 : 이 같은 표시는 수입육에 대해 직접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고, 가격의 영향을 악화시키는 작용을 함(하와이의 수입계란의 예)

(ii) 패널의 평가

- ◇ 표시 진열 명령은 기본적으로 구분판매제에 따른 부수적인 조치로 원산지 표시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3조 4항 위반임.

(iii) 한국의 대응에 대한 검토의견

- ◇ 국내의 소비자들의 알 권리가 국가 간 교역보다 더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강변할 필요가 있던 것으로 판단됨.
- ◇ 소비자들이 수입육과 국내산육에 대한 구분을 전혀 못하는 상황에서 표시 및 진열의 구분은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것이었다

는 점을 더욱 강력히 주장할 필요가 있었음.

iii) GATT 제 20조 d 항에 부합 여부

(i) 당사국간의 쟁점사항

◇ 한국의 주장 :

- 구분판매체제는 불공정 거래방지법에 의해 보호되며 부정 판매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수입육은 국내산보다 싸기 때문에 둔감의 소지 충분
- 1990년 부정육 유통 방지를 위해 만든 것임(1988년 수입 재개시 문제점 노출)
- 구분판매를 하지 않고 하나의 점포에서 국산육과 수입육을 동시에 판매하는 소위 단일 점포체계 정책은 둔감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부차적인 비용이 수반된다는 측면에서 의무사항이 아님.
- 소비자는 수입육이 싸게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

◇ 제소국의 주장(호주, 미국 제 20조 d 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호주) 수입육에 대한 기록유지 명령은 적절하지만 자국산에 대한 기록유지는 안함. 그럼에도 한국은 자국산 쇠고기의 공급원을 확인하지 못했고, 이로 해서 자국 내 점포에서 부정이 발생함.
- 구분판매제가 부정육 유통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는 아니라고 주장(대안 제시)
- 젓소고기와 한우고기의 잘못된 표시, 한국경제의 다른 부문에서 일어나는 부정행위가 자주 보고됨. 한국의 구분판매제가 Article XX의 제목에서 규정하는 어느 조항에도 불일치

(ii) 패널의 평가

◇ 제 20조 d 항의 보호의 이익을 얻기 위해 한국은 구분판매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 주어야 함.

- ① GATT 규정에 부합하도록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임.
- ② 한국 쇠고기시장에서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
- ③ 차별적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점.

① "GATT 규정에 부합하도록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였는지 여부에 대해

— 한국의 제출내용(수입쇠고기 관련)

- 1989-90년의 경험에서 볼 때 단일 판매체계하에서는 둔갑을 방지하기 너무 어렵고 너무 많은 비용이 수반되어 불공정 거래방지법의 정상적 적용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음.
- 둔갑은 국내산과 수입육 간의 커다란 가격 차이 때문에 발생
- 한국시장에 값싼 수입육이 도착하면 둔갑행위의 빈도가 많아짐.
- 둔갑행위 방지를 위해 한국은 소매단계에서 수입육 분리를 결정

— 패널의 평가

- 패널은 구분판매가 둔갑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한 이례적인 대처방식으로 인식함.
-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구분판매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불공정거래방지법과 같은 목적에 의해 실현되었음을 인정.
- 그럼에도 구분판매 조치가 수입육이 국산육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중대한 의문이 남으며, 이에 대한 증명은 한국의 책임임.

— 한국의 대응에 대한 의견

- 구분판매제가 둔갑 방지를 목적으로 취해진 이례적인 대처방식이 아니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나라의 당시 조사체계마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 설명했으나, 객관적인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패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보다 설득 가능한 자료와 근거를 향후 제소 과정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요구됨.

② 쇠고기 원산지 둔갑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 패넬의 평가

- 구분판매의 필요성을 보이기 위해 한국은 패넬에 다음과 같은 점을 확신시켜야 함.

㉠ 미·호가 주장한 내용에 대한 반대 논리의 제시

㉡ WTO 규정과 부합되는 다른 대안적 조치가 없으므로 합리적이고 가용 가능한 조치였다는 점.

- 패넬은 한국이 다음의 두 가지 건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다고 인식

㉠ 한국은 한국의 타 경제 분야 타 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슷한 둔갑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구분판매제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했고

㉡ 한국은 구분판매체계 이외의 WTO 규정에 부합되는 다른 조치가 수입육을 비롯한 원산지 둔갑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패넬에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하지 못했음.

- 한국의 대응에 대한 의견

- 한국은 구분판매제가 쇠고기의 원산지 둔갑표시 방지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였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 못함.

③ 한국의 경제 타 부문에 있어 구분판매제가 있는지에 대해

- 제소국의 주장 :

- 한우와 젓소고기간에 둔갑위험을 포함한 상황에 대해 다르게 조치(한우와 젓소고기에 대한 구분판매제가 없음)

- 한국의 대응 :

- 한국은 젓소의 유통량이 무시할 정도로 작다고 설명.

- ㉓ 미국은 축협중앙회의 자료를 이용하여 1993-98년간 젓소 도축량은 전체 소 도축두수의 18-56%. 이에 비해 소매점포 범위에서 수입육의 판매비율은 전체 쇠고기 소비량의 10-15%, 전체 쇠고기수입량 26%이었으므로, 한국의 설명처럼 한국 젓소고기가 양적으로 무시할 정도라면 수입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라고 주장
- ㉔ 한국은 1998년 두 가지 형태의 국산육을 구분하기 위해 유전자 감식법을 이용한 육질감별기술(DNA Test)을 개발함.

패널의 평가

- 한국의 유전자 감식법을 이용한 육질감별기술(DNA Test) 개발에 대해서 패널은 이러한 과학적 Test를 믿지 않을 뿐 아니라,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처럼 늦은 발견이 1998년 이전의 기간에 자국산 쇠고기(한우육과 젓소육)의 구분판매체계 결여라는 견지에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임.
- 패널은 타 농업 부문에는 구분판매제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한국은 패넬에 대해 왜 돈육이나 어육 등 다른 단백질원도 마찬가지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구분판매제를 채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함.
- 더구나 약 45%나 되는 수입육이 음식점에서 판매되고 있었지만, 거기에서는 수입육을 구분하여 표시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함.
- 두 가지 가능한 경우란
 - ㉓ 몇몇 한국식당이 수입육을 한우로 공급할 수 있음. 이 경우 한국은 구분 식당제를 설정하여 허위표시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 ㉔ 몇몇 한국식당이 원산지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고기가 한우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을 경우가 있음. 이 경우 정육점의 경우와는 달리 적어도 이윤을 설정치 않고 식당은 이러한 행위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준비도 하지 않을 것임.

— 한국의 대응에 대한 의견

- 젓소고기의 전체 소비량 중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임. 따라서, 젓소고기의 공급비중이 작다는 이유로 구분판매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논리는 부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의 경제 타 부문에 왜 구분판매제가 없는 지에 대한 설명을 더욱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짐.

iv) 쇠고기 소매시장에서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WTO 부합성 대안의 존재 여부에 대해 (구분판매제는 외국산과의 경쟁으로부터 자국산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는가?)

(i) 제소국이 제안한 대안적 조치 :

- | | |
|---------------|-------|
| ① 라벨링(원산지 표시) | ② 기록 |
| ③ 고발 | ④ 벌금형 |

- ◇ 구· 판매기록을 회계감사함으로써 상품원산지의 둔갑표시를 확인(Identify) 할 수 있어, 한국의 WTO 부합노력에 도움이 될 것임.
- ◇ 기록제출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고, 쇠고기 판매의 전반에 기록을 적용한다면, 둔갑판매를 방지할 수 있고, WTO 규정에도 부합되는 길이 될 것임.
- ◇ 구분판매체계가 WTO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것에 대해 WTO 규정에 부합되는 그 외의 제시된 대안적 조치로, 허가의 대가로 일반적인 기록을 유지하는 요구를 하는 대안을 제시함. 한편, 수입육에 대한 기록유지를 명령하려면 자국산에 대해서도 기록유지 명령하여야 할 것이며, 이럴 경우 파악이 쉬워질 것이라는 점을 지적함.

(ii) 한국의 대응 :

- ◇ 조사연구, 고발 등을 통한 부정행위의 기록이라는 전통적인 수단은 실행성이 없음. 그 이유는 수입육과 국내산의 구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임.
- ◇ 회계감사의 강화라는 조치는 분배체계가 발전되지 못한 상황에서 아직 유효하지 못함. 극소수의 상인만이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임.

(iii) 패널의 의견

- ◇ 조사연구 불가능 : 1989년 12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논의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육의 정확한 양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하였음(구분 판매 도입전에는 조사 연구체계를 갖추고 있었음). 한국의 주장과 비교하면, 그러한 능력이 몇 년 후 점차 사라져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 ◇ 벌금형의 효과는 벌금의 수준과 체포의 가능성, 둔갑에 의한 수익마진 결과의 수준에 관한 수단에 달려 있음. 패널은 고발의 위험이 효과적인 제재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
- ◇ 앞의 논의에 기초하여 패널은 한국이 패널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보여 주지 못했다고 판단함.

(iv) 한국의 대응에 대한 의견

- ◇ 한국이 구분판매제 이외의 대안적 조치가 실행성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패널에 만족스러운 설명을 하지 못함.
- ◇ 구분판매제의 도입이 자국산 상품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었음.

다. 패널의 최종 판결

- 한국의 20조 대응에 대한 결론(쇠고기 구분판매체계의 WTO 부합성 여부
부에 대해)
- 패널은 한국의 쇠고기에 관한 구분판매제가 GATT 제 3조 4항의 목적
에 부합되지 않으며, 그 이유는 수입육을 자국산보다 불공정(less
favorable)하게 대우하고, 제 20조 d 항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를 찾지 못
해 차별이 발견되었기 때문임. 따라서, 이는 제거되어야 함.
- 한국은 이미 한국에서 사용하는 조치이건 앞에서 제안된 조치이건 아
니면 또 다른 조치이건 간에 구분판매제를 대체할 수 있는 WTO 규정
에 부합되는 조치를 선택하여 결정하여야 함.

2. 쇠고기 수입 제도

가. 현행 쇠고기 수입제도의 내용

- 현행 쇠고기 수입은 수급조절용과 동시매매입찰(SBS)용으로 구분되어 있
으며, 수급조절용은 축산물유통사업단(LPMO: 1988년 설립)이 수입하여
유통시키고 있으며, 동시매매입찰용(SBS)은 슈퍼그룹이 수입하여 유통시
키고 있음.
-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는 미국과의 협의에 의하여 1988년부
터 축산물 유통사업단(LPMO)을 통해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음.
- 1989년 쇠고기 패널 결과에 따라 1990년 쇠고기 수출국과 협의하여 체결
한 양해각서(ROU)에 따라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육가공업자, 음식점
등을 회원으로 하는 슈퍼그룹이 자율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수출업자

와 수입업자간 자율거래제도(SBS)를 도입함.

- 이에 따라 현재 쇠고기는 LPMO를 통한 수입과 슈퍼그룹을 통한 수입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한편 1993년 UR 협상 결과에 따라 쇠고기 쿼터량은 1995년 123천 톤에서 2000년 225천 톤으로 확대되고 2001년 완전 자유화될 예정임.
 - SBS 쿼터 물량은 1995년 총수입쿼터량의 30% 수준에서 2000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됨.
 - SBS 쿼터 물량에 부과되는 부과금(Mark-Up)은 1995년 70%에서부터 매년 줄여 나가 1999년 10%로 감축되고, 2000년에는 없어짐.

표 2. UR 협상에서 합의된 쇠고기시장 개방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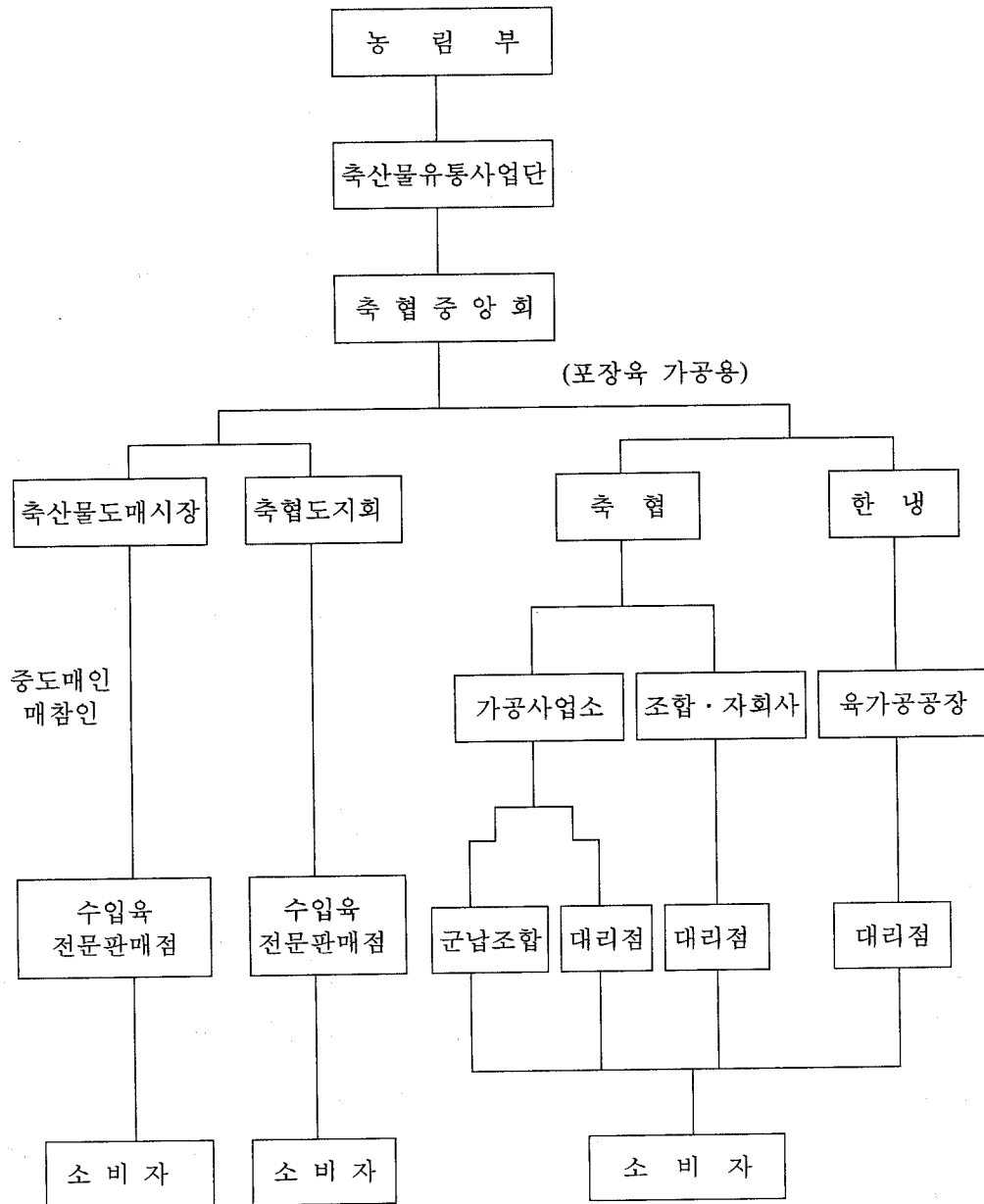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수입쿼터 (정육,천톤)		106	123	147	167	187	206	225	완전 수입 자유화
S B S	쿼터비율	20	30	40	50	60	70	70	
	쿼터량(천톤)	21	37	59	84	112	144	158	
	MARK-UP	95	70	60	40	20	10	0	
	관세(%)	20	43.6	43.2	42.8	42.4	42.0	41.6	
육포 및 식용설육		1997년 7월1일 수입자유화(관세: 육포 30%, 설육 20%)							
생 우		2001년 수입자유화(관세 41.2%)							

1) 축산물유통사업단(LPMO)를 통한 수입 및 유통체계: 수급조절용

- 농림부는 국내산 쇠고기 공급 상황을 감안하여 분기별 수급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에 상응하는 수입계획(분기별 · 부위별 · 등급별 수입물량)을 수립함.

- LPMO는 분기별·부위별·등급별 수입물량을 사전에 고시하고, 이 물량을 최저액에 수입·인도할 수입상사를 선정하며, 선정된 수입상사는 그들이 수입한 물량을 유통사업단에 인도함.

그림 1. 수급조절용 수입쇠고기 유통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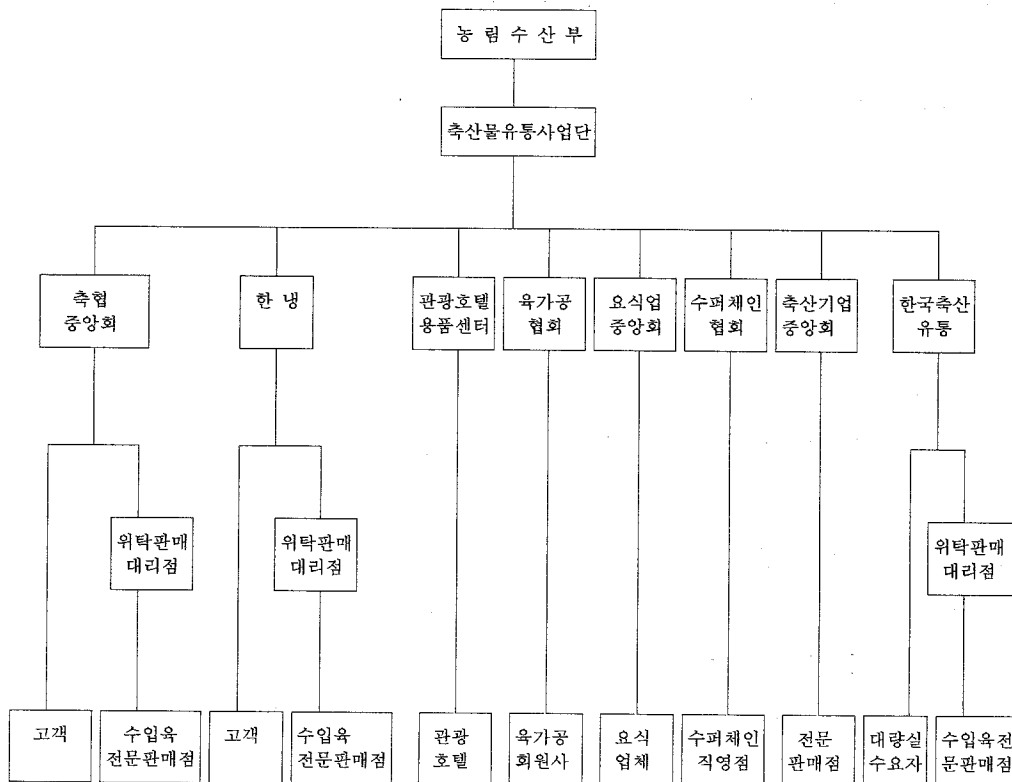


- LPMO는 수입·인도된 물량을 축협중앙회(NLCF)에 위탁 판매함. 정육은 축산물도매시장에 상장 경매하거나 축협도지회(도매시장이 없는 도의 경우)를 통해 수입육 전문판매점에 판매됨. 지육은 축협이 육가공사업소·조합·자회사를 통해 군납조합이나 대리점에 판매하거나 한랭이 지사(육가공공장)를 통해 포장육으로 가공하여 대리점에 판매하는 두 가지 유통망을 가짐.

2) 동시매매입찰(SBS)를 통한 수입 및 유통체계

- SBS제도는 쇠고기 수입에 있어서 외국의 쇠고기 수출업자와 한국의 실수요자가 직접계약을 하도록 하는 자율거래제도임(1991년 제정).

그림 2. SBS용 수입쇠고기 유통체계도



- SBS물량의 수입주체는 축협중앙회, 한국냉장, 관광호텔용품센터, 육가공

협회, 육가공조합, 농축산물공급센터(요식업중앙회), 슈퍼체인협회, 축산 기업중앙회, 한국축산유통(축협유통), 축산물위생처리협회, 우주특수, 수입육전문유통, 등으로 구성되는 슈퍼그룹(Super-group)이고, 이에 대한 수입추천업무는 LPMO가 담당함.

○ SBS용 쇠고기의 수입절차 및 방식

- 수입단체들은 배정된 수입물량에 따라 실수요처와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수입단체가 LPMO에 수입추천 신청을 하면 LPMO는 수입단체에 수입추천서를 발급하며, 수입단체는 외국 수출업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물량을 수입하여 실수요처에 공급하게 됨.

나. 수입제도 관련 분쟁의 쟁점과 패널의 판정

1) 도매단계의 LPMO 분산 체계에 대한 주장

가) 제소국 주장

i) 가공·포장되지 않은 수입 쇠고기의 도매시장에서의 판매 금지(호주)

- ◎ LPMO가 수입한 쇠고기를 도매시장을 통해서만 판매토록 하는 것은 GATT의 내국민대우(Article III: 4)에 위반됨을 주장함.

ii) 도매시장에서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으로서의 쇠고기 공급 제약(미국, 호주)

- ◎ 도매시장에서 수입쇠고기를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으로서만 판매토록 하는 것은 GATT의 내국민대우(Article III: 4)조항에 위반됨을 주장함.

iii) 현금 지불에 기초한 판매(호주)

- ◎ 수입쇠고기가 현금지불에 기초하여 판매되도록 한 조치는 GATT

Article III: 4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iv) LPMO에 의해 수입된 쇠고기에 대한 장부(기록) 유지 조치(호주)

- ◎ LPMO에 의하여 수입된 쇠고기를 구매하는 자는 구매 및 판매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그 기록을 최소한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는 조치는 수입쇠고기 유통 및 분산에 있어서 규정준수에 따른 추가비용을 발생케 함. 이러한 추가적 비용은 수입쇠고기의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함.
- ◎ 이러한 조치가 국내산 쇠고기에 적용된바 없고, 수입된 쇠고기에 대하여만 비우호적인 조치를 부과한 것으로서 GATT Article III:4에 위배됨을 주장함.

나) 한국의 대응

i) 가공·포장되지 않은 수입 쇠고기의 도매시장에서의 판매 금지

- ◎ 국내산과 수입쇠고기간에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공 포장되지 않은 쇠고기는 도매시장에서 판매될 수 없음을 주장함.

ii) 도매시장에서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으로서의 쇠고기 공급 제약

- ◎ 백화점의 분리된 수입쇠고기 판매코너를 포함한 구분판매제는 WTO에서 양허된 것임을 주장함.

iii) 현금 지불에 기초한 판매

- ◎ 수입쇠고기의 현금지불에 기초한 판매 규제 조항을 삭제함.

iv) LPMO에 의해 수입된 쇠고기에 대한 기록 유지 조치

- ◎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의 판매 기록 유지 조항을 삭제함.

다) Panel 결과

i) 도매시장의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에 대한 쇠고기 공급의 제약: 구분 판매제도

- ◎ 패널은 LPMO의 도매시장을 통한 수입쇠고기 판매는 2001년 1월1일 까지 유지 가능한 "잔존수입제한(remaining restriction)"이라고 판정함.
- ◎ 포장·가공된 것을 제외한 수입쇠고기가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에 서만 판매되는 구분판매제는 GATT Article III:4에 배치되며, Article XX(일반적 예외)의 보호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지적함.
- ◎ 구분판매제의 적용은 국내산 쇠고기보다 비우호적인 조치를 LPMO를 통하여 수입된 쇠고기에 부과한 것으로 GATT Article III:4에 배치된다고 판단함.

ii) 도매시장의 현금지불에 기초한 수입쇠고기의 판매

- ◎ 제소국(호주)은 LPMO에 의해 수입된 쇠고기가 현금지불에 의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내산 쇠고기보다 비우호적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주장을 증명할 책임을 가짐. 오스트레일리아는 증거를 확보하는데 실패함. 따라서 패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iii) 수입쇠고기 거래의 기록유지 조치

- ◎ 기록유지 조치가 LPMO로부터 구매하는 자, 수입육과 국산육을 분배하는 자에게 부과되고 있고, 그러한 조치가 한국에서 부정관행 방지를 위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처럼 보일 수 있으나, LPMO를 통하여 수입쇠고기를 구매하는 자가 국산육을 구매하는 자보다 더 엄격한 장부기록조치가 주어지므로 Article III: 4에 위배됨(한국의 규제조항 삭제로 문제점 해결).

2) SBS 체계에 대한 주장

가) 제소국 주장

- 수입할 수 있는 자의 제한, SBS membership 조치, 슈퍼그룹간 거래금지, 최종사용자와 슈퍼그룹간의 거래(cross-trading)금지, 최종사용자간의 거래 금지는 제약적이고, Article III: 4와 XI와도 일관성이 없음을 주장함.
- 한국의 전반적인 수입감독, 즉 라벨링, 보고조치와 기록유지 조치 등은 Article III: 4에 위배되며, 비슷한 조치가 국산육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호주).

나) Note 6(e)관점에서 패널평가

- SBS의 배타적인 멤버십 체계를 포함하여 슈퍼그룹간, 최종사용자간, 슈퍼그룹간 거래 금지, 장부기록 조치는 ROUs에서 이해당사국간 형성된 SBS 체계의 고유한 특징이며, 이것은 2001년 1월 1일까지 이행기간에 혜택 받은 잔존수입제한(remaining restriction)임.
- 그러나 수입된 쇠고기 최종사용자간의 거래금지는 ROUs에서 형성된 SBS 체계의 고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추가적인 라벨링 조치에 대한 언급도 없음을 지적함.

다) SBS체계의 두 가지 특별한 조치에 대한 조사

- i) 최종 사용자간 거래(cross-trading)금지

(i) 제소국 주장

- ◇ 최종사용자간 수입쇠고기 거래금지는 국산육에 비해 비우호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함.

(ii) 한국의 대응

- ◇ 수입쇠고기에 대한 개정된 관리지침에서는 수입쇠고기 전문점의 상대자인 국산육을 판매하는 곳에 수입쇠고기를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수입 쇠고기 전문판매점간 거래는 허용되어 있음.

(iii) 패널평가

- ◇ SBS를 통하여 수입되는 쇠고기에 부과된 최종사용자간 거래금지는 비경쟁적인 조치로서, GATT의 Article III: 4에 대치됨.

ii) 추가적인 라벨링 조치

(i) 제소국 주장

- ◇ SBS체계를 통하여 수입된 쇠고기에 부과하는 한국의 라벨링 조치는 article III: 4항에 위배되고 비슷한 경우가 국산육에는 존재하지 않으며(호주), 수입쇠고기의 경쟁력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함.
- ◇ 라벨링에 포함된 많은 요소가 부적절하고 비실행적이며, 필요이상으로 엄격하다고 주장함.

(ii) 한국의 대응

- ◇ 쇠고기를 포함한 모든 수입축산물에 생산자이름, 수입업자, 수입처의 주소, 생산날짜, 저장수명을 표기토록 하고 있음을 주장

함.

- ◇ 이러한 조치는 쇠고기 수입을 편리하게 하고, 세관통관 목적과 분산을 위하여 필요하며, 국산육 거래업자도 마찬가지로 생산업체, 생산자이름, 저장수명, 그리고 생산날짜를 표기하고 있음을 주장함.

(iii) 패널평가

- ◇ WTO의 내국민 우대 조치(national treatment principle)하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는 쇠고기 분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판단하지 않음.
- ◇ 1956년에 작동된 원산지표시에 관한 패널의 결론에서 “국산품에는 부과되지 않고” “원산지를 나타내는 목적을 넘어서는 필요조치”는 Article III:4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함.
- ◇ 국산육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으면서 SBS 수입쇠고기에 부과하는 최종사용자, 계약번호, 슈퍼그룹 수입업자 등과 같은 추가적인 라벨링 조치는 GATT: III: 4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함.

iii) LPMO의 최저도매가격, 1997-1998의 입찰요청에 대한 거부·연기, 불이행에 관한 주장

(i) 제소국 주장

- ◇ LPMO의 다양한 운영절차, 즉 최저도매가 또는 경매가, 입찰요청에 대한 거부·연기, SBS업체의 쿼터 물량의 보류, 그리고 수입된 쇠고기를 한국시장으로의 판매 연기 등은 WTO 양허 쇠고기 수입쿼터에 추가적인 제약이 됨(미국).
- ◇ 가격 안정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LPMO가 최저도매가격 또는 경매가격을 부과하는 관행, 월별 이행계획의 설정 및 수행, 도

때시장에서 일별 수입쇠고기 이행에 관한 통제 등은 WTO 협정에 모순됨(호주).

- 한국이 국내쇠고기가격과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최저경매가를 임의적으로 조절하여 수입을 제한하였으며, 최저경매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시키려 함으로써 국내산 쇠고기의 경쟁력을 유지하려 하였음. 패널은 그러한 최저가격이 형성되는 베이스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함.

◇ 한국의 수입쿼터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한국의 쇠고기 쿼터의 행정 관행이 수입억제의 효과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함.

- 오스트레일리아는 1998년 112200톤이 SBS 슈퍼그룹에게 할당되었으며 이중 단지 69933톤 62.3%만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했음. 슈퍼그룹 중 KMPA, LCTM 그리고 KMIA는 할당량의 99.8%, 99.3%, 그리고 97.0%를 사용하였으나 KTSC, KFMP, KRSC는 할당량의 단지 33.0%, 26.0%, 14.8% 사용했음. 이것은 다른 슈퍼그룹이 쿼터를 사용하지 못하였다할지라도 초과수요를 가지는 슈퍼그룹이 추가적인 수입쇠고기를 구매하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 제소국들은 1997년 11월부터 1998년 5월까지 기간에 한국의 쇠고기 수입 입찰 요청에 대한 거절이 1997년 말 원화의 평가절하 이후 수입쇠고기 가격의 상승과 국내쇠고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수입쇠고기에 대한 소비 감소 때문임을 인식하면서도 수입쇠고기 소비 감소의 주된 이유를 LPMO가 국내쇠고기 가격을 안정·지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입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국영무역 기업의 그러한 관행은 GATT XI항과 모순되며, 국영무역 기업에 의해 유지되는 농산물수입에 관한 규제를 금지하는 농업협정 Article 4.2의 조항과도 모순됨.

(ii) 한국의 대응

- ◇ 쇠고기에 대하여 쿼터가 있으며, 쿼터를 배분하기 위한 장치가 있음. 따라서 제소국은 이러한 쿼터 그 자체나, 쿼터의 배분에 필요한 장치를 문제삼을 수는 없음. 따라서 이러한 것 이외의 어떤 것이 수입을 제한하였는 지를 입증하여야 함.
- ◇ 쿼터 물량은 이미 충분히 소진되었고, 그래서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a) 최저 도매 가격

- 수입쇠고기에 대한 최저도매가격은 국산육 가격을 참고하여 형성됨.
- 최저도매가격은 수입가격(CIF가격 + 판매비용)에 주로 기초하여 설정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손실을 피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주장함.

(b) LPMO의 월간, 일간 이행관행; 수입된 재고량의 보류; 수입입찰 요청에 대한 거절·연기

- 1997년~1998년 동안 수입쿼터 불이행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한국은 수입 쿼터량을 충분히 이행하였고 WTO의무조항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특히 수입허가체계는 “허가협정 (Licensing Agreement)” Article 1.2와 3.2에서 금지하는 무역왜곡효과를 가지지 않음. 이러한 논의를 지지하기 위하여 한국은 패널에게 브라질 가금육에 있어 항소와 패널결과를 언급함.

(iii) Panel의 평가와 결과

(a) 최저 도매 가격

- 1989년 패널보고서에서 이미 최저도매가격이 존재하였고, 1993년 7월 ROUs가 LPMO 가격 관행의 개선을 위한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으며, 한국의 이행계획서에 이미 존재함.

- 패널은 최저도매가격제를 수입잔존제한(remaining restriction)으로 간주함. 따라서 최저도매가격제는 2001년 1월 1일까지 이행 기간에 혜택 받은 것임. 이 조치는 더 이상 논의대상이 아님.
- (b) LPMO의 월간, 일간 이행관행; 수입된 재고량의 보류; 수입입찰 요청에 대한 거절·연기
 - 한국의 수입쿼터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간 수입된 물량이 한국이 수입을 억제하는 수준 이하였는지를 평가함. 상업적 활동종사자간에 결정된 계약날짜는 한국의 연간 수입물량이 제약되어 졌는지를 평가할 때 적절하지 못하며, 적절한 날짜는 한국으로의 수입 쇠고기가 통관된 날짜임.

《SBS 부분》

- 패널은 1998년 SBS하의 통관기준 쇠고기 물량에 관하여 이 해당사국에 의해 제시된 수치가 틀린 점에 주목함. 패널은 한국이 제출한 수치인 1997년에 SBS하의 통관기준량이 75,666톤이고 구매량은 83,486톤이었으며, 반면에 1998년에는 구매된 것이 69,933톤이었고 통관기준 양이 94,395톤이었던 것에 주목함. 더군다나 이 수치에 따르면 SBS체제하의 슈퍼 그룹은 재고량을 초과하여 이행할 수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구매량 더욱 많이 통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함.
- 제한적일지라도 패널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함. SBS체제의 분배 및 재분배 과정은 한국 이행계획서의 Note 6(e)의 잔존수입제한이며, 2001년 1월 1일까지 이행기간으로부터 혜택 받은 조치이며, 그 때까지 제거되어야 함. 따라서 비록 SBS 쿼터 물량인 수입쿼터량의 70%가 다 이행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그러한 SBS체제는 순식간에 성공적으로 바뀌어질 수 없음.

《LPMO 부분》

(i) 1997년 11월부터 1998년 5월말까지

- ◇ LPMO는 1997년 10월 이후 입찰을 하지 않았고 저장중인 쇠고기는 금융위기(평가절하) 이전에 구입되었음. 따라서 LPMO는 저장중인 쇠고기를 판매하는 데에 있어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음. 수입쇠고기 이행에 있어 연기·지체는 상업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으며, 이 기간동안 수입쇠고기 입찰 부재는 제시된 증거로는 정당화되지 않음.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이 기간 동안 쇠고기 재고량을 증가시켜야만 했다는 것 또한 지지를 받을 수 없음.
- ◇ 1997년 10월 ~1998년 5월 사이에 LPMO의 한국시장으로 수입 쇠고기 불이행은 수입쇠고기의 재고를 가져왔고 수입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이러한 LPMO의 관행은 외국 쇠고기에 대하여 수입억제와 관련되고 Article XI와 Ad Note에 배치됨.

(ii) 1998년 6월부터 12월까지

- ◇ 1998년 6월 이후 나머지 기간에 한국의 입찰요청에 대한 연기와 수입이행요청에 대한 연기는 정당화될 수 있음. 그렇지 않았더라면 LPMO가 더 큰 손실을 보아야 했을 것이기 때문임.

iv) 목초사육쇠고기와 곡물비육쇠고기의 수입물량 제한

(i) 제소국의 주장

- ◇ 오스트레일리아는 축산물유통사업단(LPMO)의 쇠고기 입찰제도에 대하여 수입 목초사육쇠고기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지 않아 수입쇠고기의 물량제한을 받은 것으로 지적하였음. (Articles II:1, III:4와 Ad note, XI:1, XVII)

- 1999년 6월 10일, 7월 14일, 9월 10일 3회에 걸쳐 LPMO 쿼터 배정과 입찰에서 grass-fed 쇠고기를 제외하였다고 주장함.
- ◇ 이러한 목초사육쇠고기의 입찰제한은 각 수출국에 대한 비호의적인 취급(less favourable treatment)으로 간주하여 Article II: 1와 상충되고 있음.
- ◇ 오스트레일리아는 한국이 제시한 1999년도 초지비육쇠고기 수입입량이 증가했다는 자료가 부정확하다고 간주하고 있음. LPMO가 제공한 과거 3년간 자료에 의하면 초지비육쇠고기 세관통관 수입량이 1997년도의 44,000톤에서 1999년 15,000톤으로 약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초지비육쇠고기 입찰을 제한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반면에 SBS 구매량은 오스트레일리아산 초지비육쇠고기의 구매량이 증가하였음.
- ◇ 한국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반박하지 못하고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간주함.
- ◇ EEC-beef 패널 리포트(1981)에서 EEC가 고품질 곡물비육 쇠고기(high quality grain-fed beef)에 대한 tariff quota를 부과한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품질에 대한 인증은 적법한 기관이 자국의 쇠고기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함. 이에 EEC schedule에 의한 캐나다의 고품질 쇠고기에 대한 조건 부여는 Article II:1항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판정하였음.

(ii) 우리의 대응 현황

- ◇ 사육방법(grassfed/grainfed), 쇠고기 질적 차이(Quality Differential)에 대한 조건 등 (other terms and condition)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고 있음. (Article II)
- ◇ LPMO는 쿼터를 일관성 있게 공개적으로 입찰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산지규정에 구분 없이 수입하고 있음.
- ◇ LPMO의 구매량은 소비자의 요구와 선호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

으며 초지비육쇠고기에 대한 차별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 1999년도 grass-fed beef의 수입량은 1998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여 수입제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

(iii) 패넬의 판정

- ◇ 오스트레일리아의 초지비육쇠고기와 미국의 곡물비육쇠고기는 같은 쇠고기(like products)이나, 입찰 과정에서 적어도 2회(1999년 6월10일, 7월14일)에 걸쳐 구분되어 입찰에서 제외된 것으로 입증되었음.

– SBS 구매물량에서는 이러한 구분과 제한이 없었음.

- ◇ Article II에 따르기 위해서는 “Terms, conditions or qualifications”이 한국의 개방계획(Schedule)에 포함되어야 함. 그러나 초지비육/곡물비육에 대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이러한 초지비육과 곡물비육의 구분은 한국 내 시장에서도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등급제(고기의 상강도, 육색, 지방도 등)에 의하여 구분되고 있음.

Ⅲ. 소에 대한 국내보조

1. 국내보조 현황

가. 일반사항

- 우리 나라의 AMS는 개도국 지위에 따라 2004년까지 기준연도 수준(Base Total AMS)에서 총 13.3%를 감축해야 함.
 - 농업협정과 양허 이행 계획서 작성지침(modality)에 따르면 보조금 산정의 기준연도는 1986~88년임.
 - 농업협정 당시 AMS 감축대상에 속한 품목은 쌀, 보리, 옥수수, 유채, 누에고치 등임.

- 우리 나라의 양허 이행 계획서(C/S)는 1989~91년을 기준으로 하는 총 감축기준 보조액(Base Total AMS) 1조 7,186억 원을 최종 2004년에 1조 4,900억 원으로 줄일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연도별 지원상한 수준에 괄호를 넣어 기준연도 1989~91년에다 쌀의 경우 1993년 시장가격지지 값을 반영한 별도의 지원상한 수준을 함께 표기함(표 3).
 - 1989~91년(쌀은 1993년)을 기준연도로 삼은 경우, 감축기준 총 AMS는 2조 2,595억 원이며 양허 수준은 1995년 2조 1,826억 원에서 최종 2004년 1조 4,900억 원으로 해마다 770억 원 줄어들게 됨.

- 우리 나라는 1995년부터 AMS 감축의무를 허용수준 안에서 이행하고 있음(표 4).
 - 양허수준 대비 AMS 활용도는 이행기간 1995~98년에 평균 91%이고 현행 AMS는 5,126억 원이 감소함.

- 1998년에 총 AMS 대비 현재 총 AMS의 비중이 낮아진 것은 쌀에 대한 수매실적이 계획량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임.

표 3. 우리 나라의 양허 이행 계획서: 국내보조 감축약속

단위: 10억 원

총 감축기준 보조액 (Base Total AMS)	연도별 및 최종 지원 상한 수준 (1995~2004)	
1,718.6	1995	1,695.74(2,182.55)
	1996	1,672.90(2,015.60)
	1997	1,650.03(2,028.65)
	1998	1,627.17(1,951.70)
	1999	1,604.32(1,874.75)
	2000	1,581.46(1,797.80)
	2001	1,558.60(1,720.85)
	2002	1,535.74(1,643.90)
	2003	1,512.89(1,566.95)
	2004	1,490.00(1,490.00)

표 4. 우리 나라의 총 AMS 감축 의무 실적

단위: 10억 원

	1995	1996	1997	1988
총 AMS(A)	2,182.55	2,105.60	2,028.65	1,951.70
현재 총 AMS(B)	2,075.44	1,967.36	1,939.95	1,562.77
B/A	0.95	0.93	0.96	0.80

- 보조금 산출은 농업협정 부속서 3의 AMS 계산 지침, 부속서 4의 Equivalent Commitment 계산 지침, 보조금 상계관세 조치 협정의 수혜자에 대한 혜택을 기준으로 한 보조금액의 계산 지침 등에 따름.
- 보조금은 국내외 가격의 차이, 재정지출액, 농가수혜 상당액 등을 감안해 산출함.

- 시장가격 지지는 국내외 가격의 차이와 지지물량에 의해 결정됨.
 - 산출공식: (관리가격 - 외부 참조가격) × 지지물량
- 융자액에 대한 보조금 계산은 대표하는 시장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이와 융자액 및 대출기간에 의해 결정됨.
 - 산출공식:
 - ① 단기자금: [시장금리(11%) - 정책금리] × 융자액 × 대출기간
 - ② 중장기자금: [시장금리(11%) - 정책금리] × 당해 연도 대출잔액

나. 소 산업에 대한 보조

- 소 산업에 대해 시행한 보조사업은 농업협정의 국내보조 기준에 따라 구분하면 <표 5>와 같음.
- 감축대상 보조는 시장가격지지, 유통비용, 기타(우수축출하 포상금), 품목 불특정 보조 등이나, 최소허용보조(de-minimis)에 해당하기 때문에 총 AMS에 포함되지 않음.
 - 최소허용보조는 품목별 AMS가 해당품목 생산액의 10%(선진국은 5%) 이하이거나 품목 불특정 AMS가 농업 총 생산액의 10%(선진국은 5%) 이내인 경우에 총 AMS 계산에서 제외시키는 조치임.
- 최소허용보조에 포함되는 소 산업에 대한 보조 실적을 분석하면 <표 6>과 같음.
 - 이행기간에 연도별 생산액 대비 보조액의 비중(①)은 10% 미만이며 기간평균은 5% 정도임.
 - 우리 나라가 WTO/COAG에 통보한 내용은 전년도 생산액 대비 당해 연도 보조액의 비중(②)인데, 통보할 때까지 당해 연도 생산액 자료가 산출되지 않기 때문임.
 - ②에 따르면 1997~98년에 생산액 대비 보조액은 9% 미만으로 ①의 결과보다 낮으며, 기간평균은 5%를 넘어 ①보다 크게 나타남.

표 5. 농업협정에 따른 소 산업에 대한 보조의 분류

보 조 금 유 형			보 조 사 업
허 용 대 상	일반 서비스	연구	한우개량단지 운영, 축산관측, 정액 생산 및 공급 등
		병해충통제	기생충 구제, 가축방역 등
		훈련	교육홍보 등
		지도·자문	자조금, 종축등록 등
		검사	축산물 검사, 축산물 등급판정 등
		유통·판촉	한우 경진대회, 축산 박람회 등
		하부구조	축산물 공판장 건설 등
	공공비축		
	국내식량구호		학교 우유급식 등
	생산자 직접 지불	비연계 소득지원	
		소득보험·안전망	
		자연재해	피해농가 경영안전 자금 등
		농민은퇴	
		자원은퇴	
		구조조정투자지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축산단지 조성, 가축계열화,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 출하 촉진 등
		환경제도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지역보조	
	개도국 우대		
감 축 대 상	품목 특정	시장가격 지지	소 수매, 송아지 생산안정 자금 등
		유통비용	수출용 축산물 수매자금 지원, 축산물 비축자금 등
		기타	우수축출하 포상금 등
	품목 불특정		축산 경영자금 이차보전, 축산경영자금 등

표 6. 소 산업 생산액 대비 보조액

	1994	1995	1996	1997	1998	① 평균	② 평균-1
생산액(A)	1,472.50	2,023.05	2,321.70	2,170.08	1,907.40	2,105.56	1,996.83
보조액(B)	-	1.12	23.59	195.27	183.06	100.76	100.76
① B/A	-	0.06%	1.02%	9.00%	9.60%	4.79%	-
② B/A-1	-	0.08%	1.17%	8.41%	8.44%	-	5.05%

○ 우리 나라가 WTO/COAG에 통보한 소 산업에 대한 보조 실적은 <표 7>과 같음.

- 1995년에 시행된 유통비용 보조는 정책자금에 대한 이차 보전인데, 이자금 전액에 대한 보조임.
- 1996~98년에 시행된 시장가격 지지는 소 수매에 따른 결과인데, 1997~98년에 수매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관리가격은 생우를 수매한 것이므로 수매량을 활용해 기준 수량(톤)으로 계산한 것임.
- 외부 참조가격은 기준 수량 대비 고정가격을 사용함.
- AMS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지지물량(eligible production)은 실제 수매량으로 간주됨.
- 기타보조는 주로 우수축 출하 포상금으로 재원은 축발기금임.

표 7. WTO에 통보한 소 산업에 대한 보조 실적

	시장 가격 지지	유통 비용 보조	기타 보조	계	산 출 방 법
1995		1,100	18	1,118	① 유통비용보조: (시장금리-정책금리)×융자지원액 = (11-0%)×10,000 = 1,100 ② 기타보조: 자체지원 기금보조 지출액 = 18
1996	22,423		1,169	23,592	① 시장가격지지: · 관리가격 = 수매자금 집행액÷수매량(톤) = 28,850÷3,526 = 8.183 · 참조가격 = 1.823/톤 · AMS = (관리가격-참조가격)×수매량 = (8.183 - 1.823)×3,526 = 22,423 ② 기타보조: 축발기금(우수축출하포상금) = 1,169
1997	194,186		1,090	195,270	① 시장가격지지: · 관리가격 = 258,222÷35,127 = 7.351 · AMS = (7.351 - 1.823)×35,127 = 194,186 ② 기타보조: 축발기금(우수축출하포상금) = 1,090
1998	181,656		1,405	183,061	① 시장가격지지: · 관리가격 = 247,099÷35,899 = 6.883 · AMS = (6.883 - 1.823)×35,899 = 181,656 ② 기타보조: 축발기금(우수축출하포상금) = 1,405

2. 제소국의 주장과 우리의 대응 현황

가. 축산농가에 대한 한국의 국내 보조가 과다하다는 제소 관련 “패널의 위임사항 및 원고 제소의 특정성 결여에 대한 한국의 예비 판정 요구”

1) 한국 주장

- 패널의 권한은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제소에 언급된 농업협정문 3조, 6조, 7조에 국한되며 부속서 3은 직접 거론되지 않은 부분이므로 「EU의 바나나 III」나 「한국-낙농」의 판례를 참고하여 부속서 3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함.

2) 제소국 주장

- 패널의 절차 규정에 의하면 예비 판정 요청은 최초서면 제안시 포함되어야 하나 한국은 당시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이번 요청에도 최초에 포함시키지 않은데 대한 합당한 사유(just cause)가 없음.

《분쟁해결절차 규정(DSU) 6조 2항》

패널 설치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내용에는 (당사자간)협의 여부, 쟁점이 되는 특정 조치를 선정하여 문제가 된다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기에 충분한 법적 근거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 제시되어야 함.

3) 패널의 견해

- 패널은 패널설치 요구 또는 위임사항은 적어도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함; 첫째, 특정조치에 대한 서술, 둘째, 소송제기의 법적 근거에 의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충분히 나타내야 할 것.
- 「한국-낙농」상소심은 위배조항의 단순한 나열(a mere listing of the

articles)만으로는 DSU 6조 2항의 '명백성 기준'과 '법적 근거 기준'에 미흡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시하였으므로 '조항의 단순 나열'이 6조 2항의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는 사안별(case-by-case)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임.

- 「낙농」사건에서 한국은 위배된 것으로 의심받는 조항의 단순 나열로 인해 패널 진행에서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상고심이나 청문회에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한국의 반론이 기각되었음.

나. 한국의 소 산업 국내보조가 10%의 최소허용가능보조(de-minimis)를 초과하여 1997년과 1998년의 Current Total AMS가 연간 감축 양허 수준을 초과하였다는 주장

1) 제소국측의 주장

-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한국의 소 산업 국내보조가 적절히 계산될 경우 농업협정문 6조 4항의 최소허용가능보조(de-minimis)를 초과하여 7조 2(a)항에 의거 Current Total AMS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 경우 1997년의 Current Total AMS는 당초 통보된 1조 9369.5억 원에서 2조 2452.6억 원으로, 1998년의 경우 1조 5627.7억 원에서 1조 7539억 원으로 각각 늘어나 이행계획서 제4부 1항에 명시된 양허수준을 위배한다고 주장하였음. 미국은 또한 한국의 이행계획서 제4부 1항에 반영된 총 기본 보조(Total Base AMS)가 처음부터 잘못 계산되어 한국의 매년도 감축 약속을 지속적으로 손상시킨다고 주장함. 미국은 Total Base AMS가 처음부터 잘못 계산된 근거로서 부속서 3의 조항을 해석할 때 참고한 Modalities paper (MTN.GNG/MA/W/24, 1993년 12월 20일) 조항을 지적했음.

2) 우리 나라의 대응

- 우리 나라는 소에 대한 국내보조의 대부분인 수매제도의 시장가격지 지효과 산출시 수매가격(AAP)과 외부참조가격(FERP)의 차액에 실제 수매물량을 곱하여 산출한 소에 대한 품목특정적 국내보조가 최소허용보조 수준을 넘지 않아 Current Total AMS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C/S 제4부 1항의 감축계획(괄호 속 숫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 우리 나라는 1997년 1월 17일 G/AG/R/9를 통해 C/S 각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쌀에 대한 1993년 국내보조와 다른 품목들의 1989~91년 보조를 이용한 ‘괄호 속 숫자’가 실제 연간 감축 약속 계획이며 이는 1994년 3월 회원국들의 검토와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답변한바 있음.

3) 패널의 견해

i) 한국의 국내보조감축계획 수준

- ◎ 패널이 결정해야 할 사항은 소 산업에 대한 국내보조가 총생산의 10%(최소허용가능보조<de-minimis>)를 초과했는지 여부와 Current Total AMS가 양허 수준을 초과했는지의 두 가지임.
- ◎ 한국의 국내보조 양허 이행계획서(Schedule LX)는 괄호 없는 것과 괄호 있는 두 개의 column으로 이루어졌으나 어느 것이 양허 계획인지 불명확함.
- ◎ Base Total AMS는 1조 7186억 원인데 괄호 없는 숫자는 이 Base로부터 산출된 반면 괄호 속 숫자는 1997년과 1998년 모두 Base보다 높으므로 괄호 없는 것이 양허계획이라 결론 내림. 한국은 국내보조

감축 이행계획에 두 가지 숫자를 제시한 유일한 WTO 회원국인데 농업협정문 어디에도 국내보조 감축 계획 수립시 다른 모든 개발도상국들까지 준수한 기준과 관행을 어겨도 된다는 규정이 없음.

ii) 소 산업에 대한 1997년과 1998년의 국내보조

◎ WTO에 통보된 1997년 국내보조 1조 9369.3억 원은 양허 상한 수준인 1조 6500.3 억원을 초과함. 팔호속 금액인 2조 286.5 억원을 기준으로 해도 Current Total AMS를 계산하는 방법에 오류가 있음. 1998년 국내보조는 1조 5627.7억 원으로 통보되어 양허 상한 1조 6271.7억 원보다 낮지만 6조와 부속서 3에 의해 적절하게 계산될 경우 양허 수준을 초과함. 한국의 오류는 가공단계의 차이 등 잘못된 방법으로 산출한 소의 외부참조가격(FERP)을 이용하여 시장가격지지를 계산하였다는 점과 부정확한 “가격지지 대상물량(eligible production)”을 사용하였다는 점, 그리고 현행 보조 계산시 면제되지 않는 보조를 누락한 점 등 오류가 있음.

◎ 시장가격지지(수매사업)는 한국의 소 산업 보조의 근간이며 부속서 3의 8항은 “시장가격지지는 외부참조가격과 실제 지지가격간의 차이에 수매대상물량(quantity of production eligible)을 곱하여 산출”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여기서 시장가격지지의 AMS 산출시 ‘정부의 지출’에 기초하지 않았음을 주의할 것. 부속서 3에 규정된 시장가격지지는 ‘예산지출’이 없는 경우조차도 존재가 가능함. 왜냐 하면 8항은 수매(buying-in)나 저장비용(storage costs) 등 이러한 가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지출(budget payments)은 AMS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기 때문임.

◎ 일반적으로 시장가격지지가 있으면 모든 생산자들이 가격이 어느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는 혜택이 있으므로 ‘eligible production’은 실제 정부 구매가 없거나 작더라도 “시장에 팔 수 있는 모든 생산자의 총생산(total marketable production of all producers)”이 되어야 함. 외부참조가격(FERP)과 구매가격(AAP)은 같은 가공단계로 환산되어 산출되어야 함. 부속서 3의 7항은 외부참조가격(FERP)과 구매가격(AAP)이 생산물의 최초판매단계에서 계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부참조가격(FERP)도 기초생산물에 대한 구매가격(AAP)의 산출과 같은 단계로 환산되어야 함.

- ◎ 한국의 외부참조가격(FERP) 계산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임. 1997년 1월 27일 농림부(MAF)의 보도자료에는 구매가격(AAP)이 500kg 기준 한 마리당 240만원(한우 수소 기준, 97년 내내)이었음. 이 계획이 다른 종류에도 적용되었기 때문에 한국은 구매가격(AAP)의 가중평균치를 적용하였으며 계산 단위도 마리당 기준에서 지육(carcaass weight) kg당 기준으로 전환한 반면 외부참조가격(FERP)은 1989~91년의 정육(product weight)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외부참조가격(FERP)을 판매의 최초 단계에 근접하게 전환하여 가격차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함. 즉, 구매가격(AAP)은 생축 기준인 반면 외부참조가격(FERP)은 정육 기준이지만 두 가격 모두 지육 가격인 것처럼 산출되어 한국의 외부참조가격(FERP)은 도축비용 만큼 과대 계상 되었음. 이는 구매가격(AAP)과 외부참조가격(FERP)간의 차이를 줄여 결국 국내보조를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음.

- ◎ 더욱이 한국은 Base Total AMS 산출시 부속서 3에 따른 “적절한 자료와 방법(constituent data and methodology)”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특히 9항과 11항에 명시된 1986~88년의 외부참조가격(FERP)을 사용하지 않았음. 한국은 당시 소 수입이 없어 적절한 수입가격이 없었기 때문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부속서 3은 대리가격을 사용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도 쌀과 보리에 대한 보조표(Supporting Table 6)에서는 대리가격을 이용하였음. 그러므로 1997년과 1998년 모두 한국의 FERP는 6조와 부속서 3의 9항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잘못 계산되었으며 농업협정문에 제시된 방법론과 불일치하게 일방적으로 1989~91년 가격 기준 외부참조가격(FERP)을 산출함으로써 국내보조 계산을 왜곡하였음.

- ◎ 한국은 시장가격지지 계산시 수혜 대상(eligible) 생산량 대신 실제 구입량을 사용하여 가격지지를 잘못 계산하였음. 부속서 3조 8항은 “production eligible”이란 실제 구입량이 아니라 가격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물량이라 명시하고 있음. 한국은 수매대상(수매계획) 물량을 제시함으로써 이 물량이 지지가격을 받을 수 있는 물량(eligible to receive the applied administered price)이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전체 생산량의 가격을 지지하였음. 이러한 종류의 가격지지는 판매 가능한 물량 전체에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정부의 조치에 의한 시장가격지지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음.
- ◎ 한국은 기준 기간의 AMS 산출시 소의 실제 생산량을 사용했기 때문에 (현행)AMS 계산에 ‘eligible’ 생산량을 사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한국의 Base Total AMS를 산출한 보조자료(AGST/KOR)에는 Total Base AMS에 포함된 소나 가축에 대한 품목 특정적 AMS가 없었음. 따라서 한국은 1조 (a)(ii)항에 의거하여 “보조표에 사용된 적절한 자료와 방법”이 없을 경우 부속서 3의 규정만을 기초로 계산해야 함.
- ◎ 패널의 해석에 따라 “eligible production”을 계산하면 500kg 이상의 한우를 하루 500두씩 340일(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간 수매 계획이므로 17만 마리가 되고 지육 기준으로는 (전환율 0.619) 52,615

톤이 되나 한국은 1997년 35,127톤이라 통보하여 시장가격지지 및 소에 대한 AMS 그리고 Current Total AMS를 과소 계상함. 그 밖에 젓소와 잡종 소에 대한 지원까지 합하면 소에 대한 AMS는 더욱 증가할 것임. 더욱이 한국은 총생산액 자료가 1997년 아닌 1996년 자료를 사용하여 회원국들이 다른 연도의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농업협정문의 정신과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음.

- ◎ 한국은 “축산농가에 대한 대출이자 보조(1997년 272.8억 원, 1998년 317.7억 원)”를 6조 4(a)(ii)항에 속하는 ‘품목 불특정적’ 최소허용보조로 분류하였으나 패널은 6조 4(a)(ii)항에 의거한 감축면제의 조건은 “농업생산자 전부에 대한 보조”로서 특정한 품목류의 생산자에 대한 보조는 제외된다는 견해임.

iii) 소 산업에 대한 1997~98년의 AMS와 Current Total AMS의 재산출

- ◎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한국이 1997년과 1998년 소 산업에 대한 보조를 잘못 계산했다고 주장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소에 대한 품목특정적 국내보조와 한국의 Current Total AMS를 재산출하여 제출하였음.
- ◎ 명확성과 간편성이 있고 원고측 견해와 일치하는 제3자 뉴질랜드의 계산방식에 따르면 1997년 수매가격(AAP)이 kg당 7,351.1원, 외부참조가격(FERP)은 1,514원이고 대상물량(EP)을 52,615톤이 되어 시장가격지지는 3,071억 원, Total AMS는 3,082억 원으로 총생산액(2조 1070억 원)의 14.6%이며 같은 방식으로 1998년의 Total AMS는 1,911억 원이 되어 총생산액(1조 8360억 원)의 10.4%로 모두 최소허용가능보조(de-minimis) 수준을 초과함. 여기에 젓소 및 제주산 잡종우에 대한 보조를 합할 경우 총생산액 대비 비율은 각각 15.8%와 11.7%로 증가함.

- ◎ 따라서 한국은 농업협정문 7조 2(a) 항에 의거 소에 대한 국내보조를 Current Total AMS에 포함시켜야 하며 그 경우 Current Total AMS는 1997년 1조 9369.5억 원이 아닌 2조 2452억 원이 되고 1998년에는 1조 5627.7억 원 대신 1조 7539억 원이 됨. 이는 감축약속 수준(1997년 1조 6500.3억 원 또는 괄호 안의 2조 286.5억 원 및 1998년 1조 6271.7억 원)을 초과하여 3조 2항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은 얼핏 보기에 증거가 확실한 사건(a prima facie case)으로 판단됨.

3. 패널의 판정

가. “패널의 위임사항 및 원고 제소의 특정성 결여에 대한 한국의 예비 판정 요구”

1) 패널의 평가

- 패널 설치에 관한 3대 원칙은 쟁점이 되는 특정 조치의 설정과 위배 조항의 명확한 식별, 그리고 피고의 자기방어 능력 침해 여부임.
- 먼저 쟁점이 되는 특정 조치는 “한국의 1997년 Current Total AMS가 C/S 상의 국내보조 감축 약속(C/S (LX) 제4부)을 초과”하였다는 점이며 미국은 1998년에도 초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 위배된 조항은 농업협정문 3조로서 “협정문 6조 (3항)에 의거 C/S 4부 1항에 규정된 감축 약속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계획된 감축 약속 수준에 부합한다는 것은 당해 연도의 Current Total AMS가 감축 약속 수준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만일 초과할 경우 3조 2항에 위배됨. 따라서 원고는 한국의 총국내보조가 양허계획수준을 초과했음을 입증해야 함. 그러나 한국의 품목특정적 보조에 관한 Supporting Table 6에 쇠고기는 명시되지 않아 “constituent data”가 없으

므로 부속서 3에 의해 계산하여야 함.

- 즉, 제3조와 6조는 부속서 3과 직접 연관됨. 결과적으로 부속서 3의 조항에 위배된다는 제소가 없으므로 부속서 3의 조항은 참고할 수 없다는 한국의 주장은 6조를 무용화시키므로 기각함.
- 한국 측의 방어 능력에 대한 침해 여부는 한국이 원고 측의 제소 성격에 대해 불확실한 사항이 있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으며 패널 설치 요청에 특정성이 결여되어 손상을 받거나 자기 방어 능력을 침해 받았다는 주장도 하지 않았음.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 쇠고기에 대한 AMS를 산출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가 누락되어 한국의 현행 국내보조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부속서 3의 방법론만을 기초로 할 수밖에 없음.

2) 패널의 판정

- 패널은 한국의 Current Total AMS가 적절히 계산될 경우 한국의 C/S상 감축 양허를 초과한다는 취지의 원고 측 주장을 제6조와 부속서 3조에 기초하여 심의할 수 없다는 한국 측 주장을 수락할 수 없음.

나. 한국의 소에 대한 국내보조가 최소허용가능보조(de-minimis)를 초과하여 1997년과 1998년의 Current Total AMS가 연간 감축 양허 수준을 초과하였다는 제소에 대한 패널의 판정

- 패널은 한국의 소에 대한 1997~98년의 국내보조가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았고 최소허용보조를 초과하여 농업협정문 6조에 위배된다고 결론지었음. 또한 패널은 한국의 소에 대한 1997~98년의 국내보조가 한국의 Current Total AMS에 포함되지 않아 동 협정문 7조 2(a)항에 위배되며 따라서 한국의 1997~98년의 Current Total AMS가 한국의 이행

계획서 제4부 1항에 규정된 감축계획 수준을 초과하여 농업협정문 3조 2항에 위배된다는 점을 발견하였음.

- 분쟁해결절차(DSU) 3조 8항에 의거, 협정문상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에 따른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소송요건에 충분한 증거를 갖는 사건으로 간주됨. 따라서 한국이 협정문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 조치를 취한 만큼 그로 인해 원고 측에 미치는 영향을 무효화하거나 수정해야 할 것임. 패널은 분쟁해결기구가 한국에 대하여 농업협정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각종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것을 권고함.

IV. 주요쟁점별 대응논리 및 향후 대책

1. 수입육 구분판매제도

가. 대응논리

1) 소비자의 식별능력 결여로 둔갑으로 인한 소비자 잉여 및 생산자잉여가 감소됨으로 WTO의 기본정신(자유무역에 의한 잉여 증대)에 위배됨.

○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WTO의 정신은 자유무역에 의한 사회적 잉여의 증대라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음.

— 사회적 잉여 = 소비자잉여 + 생산자 잉여

○ 국내에서 수입육이 한육우 쇠고기로 둔갑할 경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잉여의 감소

○ 수입육이 국내산 쇠고기로 둔갑됨에 따라 국내산 쇠고기 시장에서의 공급량이 증가됨에 따라 가격이 하락됨. 이에 따라 생산자 잉여도 감소됨.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동시에 감소됨에 따라 WTO 설립의 기본정신인 무역에 의한 사회적 잉여의 증대를 실현시키지 못함.

○ 구분판매제는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소비자 보호는 국제무역보다 중요함을 강조

— 국가 간 자유무역의 기본정신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포함한 사회적 잉여의 증대에 있음을 강조

2) 구분판매가 수출국의 판매량면에서도 유리

- 가격차별 정책은 동일품목(국내산과 수입육은 구분이 어려움으로 소비자는 동질의 상품으로 인식)에 대하여,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이하고, ② 시장이 분리되어 있다는 가정이 필요함.
 - 수입육의 수요탄력성 -2.4007, 국산육의 수요탄력성 -1.2428⁹⁾로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매우 탄력적이어서 수입육의 공급 확대에 의한 가격의 안정에 효과적일 것을 이론적 근거로 함.
- 시장분리의 방법으로 ① 구분판매의 방법과 ② 원산지 표시의 방법이 있으나, 둔갑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구분판매제도를 채택함.
 - 원산지 표시의 경우 구분판매보다 시장의 분리조건 약함. 또한, 원산지 표시의 경우 둔갑의 가능성은 큰 채로 상존하며,
 - 둔갑은 제도 자체의 미비에서 오는 문제라기보다 사람의 윤리의식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의 방법으로 둔갑을 방지하기란 매우 어려움. 제도적으로 구분 판매토록 함으로써 둔갑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나. 향후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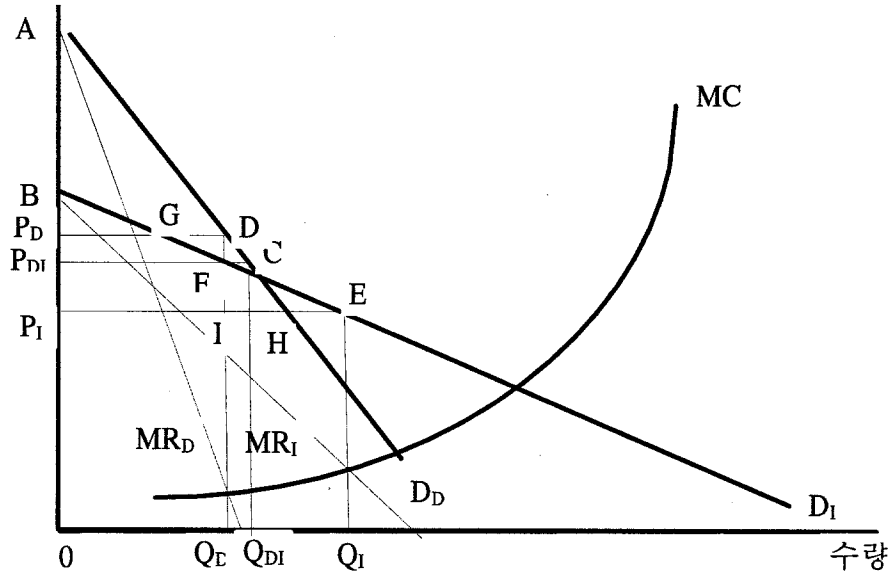
1) 비우호적 대우(less favorable treatment)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 입증 방법: 쇠고기 구분판매제가 비우호적 대우가 아니었음을 입증
 - i) 쇠고기 구분판매제 도입의 목적이 첫째, 둔갑의 방지와 함께 둘째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우고기 고급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1993.8, p.11

수입육 공급을 통한 소 가격 하향안정에 있었음을 입증

그림 3. 구분판매제 도입에 의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 수입차이 모형
가격



PD : 국내산 쇠고기 국내 판매가격

PI : 구분판매시 수입쇠고기 국내판매가격

PDI : 구분판매 폐지시 국산육과 수입육의 평균 국내판매가격

QD : 국내산 쇠고기 국내 수요량

QI : 구분판매시 수입쇠고기 국내수요량

QDI : 구분판매 폐지시 수입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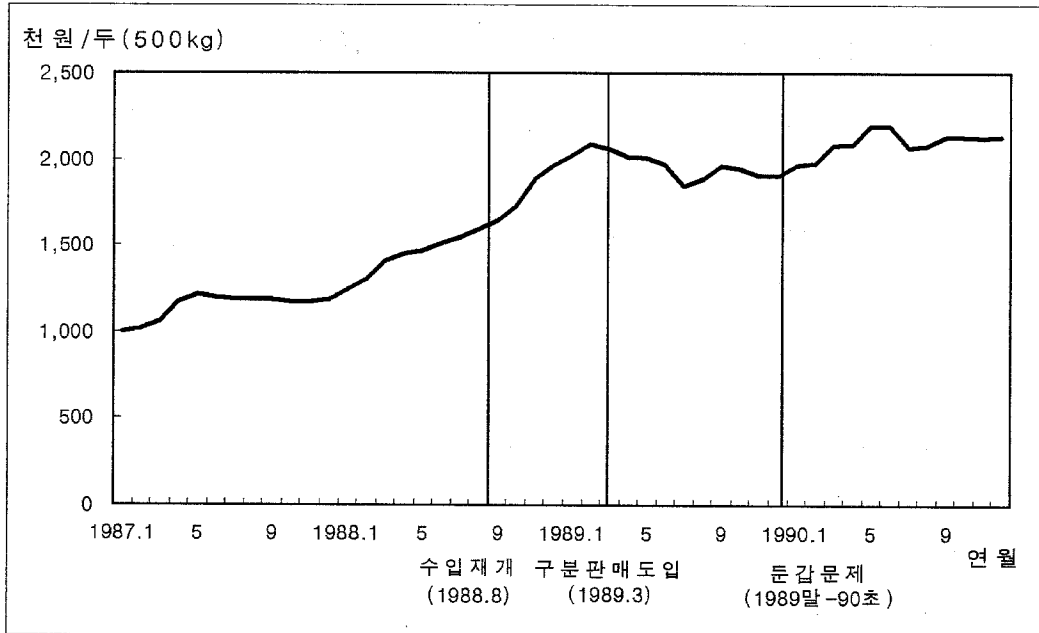
	구분판매(A)		구분판매 폐지(B)	차이(A-B)	부호의 가능성
	국내산	수입육			
소비자잉여	$\Delta APDD$	$\Delta BPID$	$\Delta APDIC$	오각형 $PDPIECF - \square GFCD$	+
국내생산자 조수입	$\square PDDQD0$	$\square PIEQI0$	$\square PDICQDI0$	$(\square PDDFPDI + \square HEQIQDI) - \square FCHI$	+
수입량	-	0QI	0QDI	$QI - QDI$	+

◎ 둔갑의 방지가 구분판매제의 첫 번째 도입 목적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방법

- 당시의 둔갑정도 시산 : 이러한 시산이 어려울 경우 이 연구의 1996년 추정치를 기초로 간접적인 시사를 주도록 함.
- 이러한 둔갑에 의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함.
- 쌍방협상에 있어서는 구분판매제도 도입이 오히려 수출국에게 유리함을 설명함.
 - 구분판매제가 폐지되면 둔갑이 더욱 많아 질 것이고, 둔갑이 더 많이 될 경우 수입량도 줄어들게 됨.
- 쇠고기 구분판매제도는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도입되었음을 입증함.
 - 당시의 소비자 요구자료 제시(만일 자료의 입수가 어려운 경우 당시의 관련 회의시 소비자 대표의 발언 내용 참조)
- 결론 : 구분판매제도가 소비자잉여 증대, 생산자 수입 증대 면에서 구분판매제 폐지의 경우에 비해 훨씬 유리하며, 수입량 면에서는 구분판매를 폐지하는 경우가 오히려 구분판매를 하는 경우에 비해 적어지게 되어, 우리 나라에게는 불리하지만, 수입량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수출국에는 유리하게 작용함.

- ◎ 구분판매제 도입이 소 가격의 하향 안정에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
- 구분판매제 도입의 두 번째 목적이 소 가격의 하향 안정에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1989년 말 구분판매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① 둔갑에 의해 판매되는 저가의 수입육을 확실히 구분하여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수요를 대체토록 유도하여 국내 소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② 실제로 이러한 조치로 인해 산지 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줌.

그림 4. 구분판매제 도입당시의 소 가격 변동상황, 1987.1-90.12



ii) 판매점 수의 차이가 정부의 규제개입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 판매점 수의 차이는 소비자들의 국산쇠고기와 수입 쇠고기 간 선호도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정부의 규제 개입은 없었음을 계속적으로 주장함.

◎ 수입육 판매점에 대해서는 관행에 의거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설명함.

iii) 구분판매로 수입육의 시장개척비용 많이 소요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 국내산 쇠고기도 초기에는 시장개척비용이 많이 소요되었음. 예를 들면, 새로운 브랜드를 가진 국내산 쇠고기처럼 새로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시장개척비용이 많이 소요됨.

— 신상품에 대한 초기의 시장개척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당

연한 일임.

2) Article III:4와 특별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진열명령에 대하여

○ 국산육에 대해서도 이미 관행적으로 표시를 하고 있었으므로, 수입육과 국산육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수입육에 대해 특별한(실제는 동등한) 표시가 필요하였으며, 구분판매제가 도입됨에 따라 분리진열에 대한 명령은 당연한 후속조치임을 입증함.

○ 입증의 방법

- 입증의 필요도 없음. 단, 수입쇠고기에 대한 표시는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도입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당시의 소비자 요구사항 수집(만일 관련자료의 입수가 어려울 경우 당시 관련 회의시 소비자 대표의 발언 내용 참조)

3) GATT Article XX(d)에 적합 여부에 대하여

i) "...신뢰할 수 있는 이행을 위해 취해진 조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 한국은 둔갑의 방지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안전성을 체크할 만한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므로 구분판매제의 도입이 이례적인 조치가 아니었음을 재차 설명하여야 할 것임.

ii) 쇠고기 원산지 둔갑표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 도입의 목적이 둔갑의 방지와 더불어 가격안정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구분판매제의 도입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점을 설명함.

- 가격안정에 대한 지원이 허락되지 않는 다는 규칙은 UR 협상 타

결 결과로 나타난 것이며, 타결 당시에도 가격이 계속 상승 또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구분판매가 다른 어떤 대안보다도 효과적인 대안이었다는 점을 설명함.

-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구별을 못하고 있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분판매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함.

※ 구분판매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가 원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함.

iii) 한국의 경제 타 부문에 있어 구분판매제가 있는지에 대하여

◎ 식품이 아닌 타 부문의 경우 둔갑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은 해치지 않으므로 구분판매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음. 식품의 경우라도 다른 농산물의 경우는 원산지 표시나 둔갑의 가능성이 식육처럼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함.

- 예를 들면, 타 농산물의 경우 수입품과 국내산과는 모양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어 소비자 교육으로도 둔갑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구분판매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점을 설명함.
- 만일, 소비자 교육으로 둔갑을 방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향후 소비자 스스로 구분판매를 도입하도록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도입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함.

4) 쇠고기 시장에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더욱 WTO 규정에 부합되는 대안이 존재하는지 여부

○ 구분판매 도입전에는 조사 연구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의견에 대하여

- 한국의 조사연구체계가 갖추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그

때 그 때 단편적이고 간단한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들로 일관성이 없으며, 부정기적인 간단한 조사를 통하여 추정된 수치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었다는 점을 설명함. 아울러, 매년 정확한 조사 연구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행정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분판매의 유지 이외의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움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음.

- 고발이 둔갑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의 수단이라는 인식에 대하여
 - 소비자가 국산육과 수입육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고발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역으로 무고죄에 해당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고발에 의한 둔갑의 제재에는 한계를 가지므로, 그 강행에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수단이 찾아지기 전까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함.
 - 향후 유전자감식법을 이용한 육질 구분기술(DNA Test)이 일반화되면, 이러한 점은 해결 가능할 것이라는 것도 설득함.

2. 쇠고기 수입 제도

가. 대응논리

※ Panel의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2001년 1월1일 완전 개방 이후에도 문제로 부각될 수 있는 사안으로 1) 수입쇠고기 취급자에 대한 구·판매 기록유지의무 부과(패널사유: 차별적 조치), 2) 수입쇠고기 최종사용자간 거래금지(패널사유: 경쟁 제한), 3) 추가적인 라벨링 조치(패널사유: 국산품에는 부과하지 않고, 원산지를 나타내는 목적을 넘어선 조치)를 지적할 수 있음. 국산육에서는 표기하지 않지만 수입육에 대하여 표기하고 있는 라벨링은 최종사용자, 계약번호, 슈퍼그룹 수입업자 이름임.

1) 수입쇠고기 취급자에 대한 구분매 기록유지의무 부과

-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에서 판매에 관한 기록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WTO에 제출함(문제점 해결)

2) 최종사용자간 거래 금지

- 개정된 규정에서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간 거래 허용, 단 수입육 전문판매점에서 국산육 판매점에 재판매하는 것은 불허(문제점 해결)

3) 추가적인 라벨링 조치

- 수입쇠고기에 대하여 최종사용자 및 수입업자 표기는 국내 소비자에 대한 수입쇠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함에 따라 신뢰성 제고에 크게 기여.
- 수입쇠고기의 식품안전상 문제점(예, O-157 등) 발생시 신속한 경로 추적이 가능하고 잔여재고 물량 파악이 용이해져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짐. 그리고 국민건강보호에 크게 기여.
- 국내산 쇠고기와 수입쇠고기는 유통경로가 다르며, 유통경로상에 참여한 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수입업자 및 최종 사용자의 표기는 수입 쇠고기의 유통과정상의 특성이라 할 수 있음.

나. 향후 대책

- 국내산 및 수입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 강화
 - 부정유통 방지 및 문제점 발생시 유통경로 추적 가능
 -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의 알 권리 실현
- 부정육 유통에 대한 처벌규제 강화 및 신고 포상금 인상
 - 부정육 유통업체에 대한 벌칙강화
 - 현행 허위표시 및 둔갑판매업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원산지 미표시업자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있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사결과, 2000년 1월~5월간 돼지고기, 쇠고기 등 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업체 1,400개소가 적발되었으며, 이중 수입산을 국산육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수도 474개소에 달함.
- 부정육 유통 사례 신고 포상금 대폭인상
 - 벌금 및 과태료에 준하는 포상금 지급 검토(1000만 원, 3000만 원 상당, 벌금에 준함)
- 사법경찰 지속적 단속 실시

○ NGO의 수입쇠고기 부정육 유통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 소비자단체를 포함한 민간감시단에 대한 부정육감시 업무에 대한 예산지원
- 365일 부정육 유통방지 감시체계 구축
- 고발체계 구축 및 수사기관의 협조 체계 강화

○ 식품 안전성에 대한 의식 고취 및 소비홍보 강화

- 소비자에 대한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교육 강화
- 유통업자에 대한 위생교육강화 및 문제점 발생시 추적경로 설정
- 한우 자조금 조성 및 한우협회 등 생산자 단체를 통한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홍보 강화

○ 공공기관을 비롯한 단체급식소에 한우고기 소비 적극 장려로 국내산 쇠고기 소비확대

- 학교급식의 경우 교육부에서 한우고기 구입에 대한 지원
- 군부대에 한우고기 군납을 적극 권장
- 공공기관 및 단체에 한우고기 소비 적극 권장

- 국내산 쇠고기의 브랜드육 활성화로 수입쇠고기와 차별화
 - － 평균적 한우고기에서 「얼굴 있는 한우고기」 개념정착
 - － 등급별, 브랜드별 가격 차별화 확대 유도
 - 등급이 낮은 쇠고기는 수입육과 가격 경쟁이 가능토록 가격인하 유도
 - 등급이 높은 쇠고기는 고급육 생산을 유도하도록 동기유발 강화
 - － 고품질 한우고기 생산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거세를 통한 장기비육농가에 대한 저금리 운영비 지원강구
 -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한우고기(지역특화 상품) 생산농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원대책 강구
 - － 국내 브랜드 직매장 확대를 위한 지원강화
 - 「얼굴 있는 한우고기」 판매망 구축 및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확대를 통한 수입육과의 차별화 확대
 - －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확대를 위한 지원강화
 - 수입쇠고기에 대한 한우고기 역차별 판매 강화
- 육질 구분기술 개발 지원으로 부정유통 차단
 - － 유전자(DNA) 감식법 등을 비롯한 육질 구분기술 개발 다양화 및 일반화 강구
 - － 육질구분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지원 강화
 - － 둔갑 의심육에 대하여 유전자 감식 의뢰시 검사비용 정부 부담
- 수입 쇠고기에 대한 유통경로별 물량파악 및 정보 수집 분산 체계 구축
 - － 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 강화
 - 수입국별 쇠고기 생산, 육질(등급), 육량 등급 파악

- 수입국에 대한 가축질병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수입쇠고기의 국내 유통단계별 유통물량 파악
- 수입쇠고기 유통경로별 연차별 물량 파악 및 Flow-Chart 작성
- 수입육 유통에 대한 연구사업 강화 및 수입육 유통연구 센터(가칭) 설립

3. 소에 대한 국내보조

가. 가격지지 대상물량(Eligible Production) 문제

- 원고 측 및 패널이 명확성 등을 이유로 인용한 뉴질랜드의 한국 소 산업보조에 대한 재계산은 대상물량(EP)으로 한국이 사용한 실제(actual) 수매물량 대신 한국 농림부의 언론 보도자료를 이용하여 1997년 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340일 동안 매일 500두(500kg 기준)씩 수매할 계획 물량 170,000두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일요일과 공휴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근무 등 관행을 무시한 날짜 계산임. 1997년 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요일은 48일, 공휴일은 13일, 토요일은 48일이고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치는 3일(2월 8일, 3월 1일, 4월 5일)을 제외하면 실제 수매 가능 날짜는 340일이 아닌 256일(토요일은 평일의 절반 수매 기준)로 수정되어야 함.
- 따라서 대상물량(EP)은 256일간 500두씩 모두 128,000두가 되며 마리당 무게 500kg을 적용하면 생축 기준 64,000 톤이며 지육으로 전환(전환율 61.9%)할 경우 39,616톤이 됨.
- 공휴일 13일은 구정연휴(2월7-8일), 3.1절, 식목일(4월 5일), 부처님오신날(5월 14일), 현충일(6월 6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추석연휴(9월 15-17일), 개천절(10월 3일), 성탄절(12월 25일)임.

나. 수매가격(AAP)과 외부참조가격(FERP)의 차액 문제

- 뉴질랜드 등은 한국의 소에 대한 국내보조 계산시 수매가격(AAP)이 생축(live animal) 기준인 반면 외부참조가격(FERP: kg당 1823원)은 정육(product weight) 기준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간보고서 117쪽 제 476항의 <표 1>에서와 같이 도축비(kg당 310원)를 공제하여 외부참조가격(FERP)을 지육(carass weight) 1kg당 1,514원이라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도축비를 공제한 외부참조가격(FERP)은 지육가격이 아니라 생축(live animal) 가격이므로 수매가격(AAP)도 생축 가격을 적용해야 함. 패널이 인용한 농림부의 보도자료상에 명시된 가격(500kg 기준 2,400,000원)에 따라 kg당 4,800원임. 따라서 시장가격지지(MPS)는 다음과 같이 산출됨:

Year	AAP	FERP	EP	MPS	OS	Total AMS	VP	Percent age
	won/kg		tonnes	billion won				%
1997	4,800	1,514	64,000	210.3	1.09	211.4	2,107	10.03

- 여기서 외부참조가격(FERP)은 1989-91년의 쇠고기 수입액을 물량으로 나눈 단순 평균치로서 품질격차를 반영하지 않아 시장가격지지(MPS)가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03%로 나타났음. 따라서 고정외부참조가격(FERP)에 “품질 격차(Quality Difference)”를 반영할 경우 가격지지 수준은 총생산액의 미만으로 줄어들 것임..

- 뉴질랜드는 우리 나라가 농업위원회에 제출한 답변 문서(G/AG/R/13)

의 37쪽을 참조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 문서에 의하면 외부참조 가격(FERP)의 지육 혹은 정육 여부 및 grass-fed(저급육) 혹은 grain-fed(고급육)인지를 확인하고 만일 저급육 기준일 경우 부속서 3의 9항에 명시된 규정에 의거 한우와 수입육과의 “품질 차이(quality difference)를 고려하여” 외부참조가격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1998년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대상물량(EP)과 외부참조가격(FERP)을 다시 계산하여 시장가격지지(MPS) 수준을 다시 산출할 필요 있음.

참 고 문 헌

- 1)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1999
- 2)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축산물가격자료」, 1999
- 3) 축협중앙회, 「1996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보고」, 1997
- 4) 축협중앙회, 「축산물유통업무자료집」, 1996
- 5) 축협중앙회, 「2000년 2월 축산관측(안)」, 2000. 2. 12 (내부자료)
-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우고기 고급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1993. 8
- 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1세기에 대응한 농수산물 유통개선대책 연구-양곡, 축산 수산 부문」, 1997.6
- 8) 농림부 국제농업국, 「WTO 쇠고기패널 대책회의자료」, 2000. 5.
- 8) WTO-DSB, 「Korea-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Fresh, Chilled and Frozen Beef」, Interim Report, 2000. 5.
- 9) WTO-DSB, 「Korea-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Fresh, Chilled and Frozen Beef」, Final Report, 2000. 6.

빈 면

WTO 쇠고기 분쟁 패널의 내용과 향후 대책

등록 제5-10호(1979. 5. 25)

인쇄 2000년 7월 일 발행 2000년 8월 일

발행인 강정일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65-6950, 965-8401

인쇄 동양문화인쇄(주) 02-737-2101~5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